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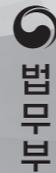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9:00~18:00

| 장소 |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

| 주최 | 법무부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9:00~18:00

| 장소 |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

| 주최 | 법무부



법무부

공청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9:00~18:00
- 장 소 : 서울역 4층 KTX대회의실

2. 진행순서

- 가. 등록 및 개회 9:00~9:30
- 나. 개회식 9:30~9:40
- 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시 9:40~10:00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라. [제1부] 자유권 분야 10:00~10:50
- 1) 신체의 자유 및 형사절차 : 나현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2) 정보인권 : 오길영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 휴식시간 ❖ 10:50~11:00
- 마. [제2부] 장애, 이주 분야 11:00~11:50
- 1) 장애인의 권리 :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 2) 이주민의 권리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 오찬 ❖ 11:50~13:10
- 바. [제3부] 사회권 분야 13:10~14:30
- 1) 교 육 권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 노 동 권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3) 사회복지 : 이상훈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 ❖ 휴식시간 ❖ 14:30~14:50
- 사. [제4부] 기업인권, 여성, 아동 분야 14:50~16:10
- 1) 기업과 인권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2) 여성의 권리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 3) 아동의 권리 :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법학박사)
- 아. 관계부처 의견제시 16:10~17:00
- 자. 자유토론 17:00~18:00

공청회 자료집 목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제1부 | 자유권 분야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절차 17
나현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정보인권 27
오길영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제2부 | 장애, 이주 분야

- 장애인의 권리 47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 이주민의 권리 83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 제3부 | 사회권 분야

- 교육권 93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권 101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사회복지 117
이상훈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 제4부 | 기업인권, 여성, 아동 분야

- 기업과 인권 129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여성의 권리 153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 아동의 권리 161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법학박사)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안) 분류표 167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시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조 영 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개요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종합계획으로, 국내외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음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93년 UN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많은 권고와 제안을 담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함

-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 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UN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 2001년 5월 21일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추후 제출될 제3차 정기보고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목표와 주요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활동 강화
 - 국가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 확산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강화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대효과

- 인권 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
-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자원의 합리적 활용
 - 인권정책은 정부의 교체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목적과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보장 개선의 한국적 모델 구축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모델인 바, 인권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
 - 우리나라가 인권 보장 개선의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요망
-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 향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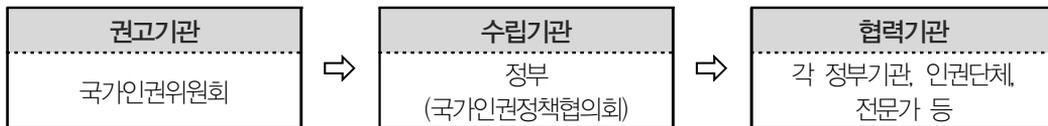
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추진과정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원칙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함

-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 준수
- 인권침해의 구체적 현실과 인권 피해자의 당면 문제 고려
-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 고려
- 시민사회의 참여 및 대중성 확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 준수
-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과제의 영역별 특수성 고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관별 역할 분담



- (권고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대부분 국가는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수립기관) 정부(국가인권정책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통보하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담당할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함

- (협력기관) 정부, 인권단체 및 전문가
 - 정부기관, 인권단체 및 전문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정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 의견제출 또는 협의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단계별 추진과정

구분	준비단계	개발단계	이행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	
단계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 ○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 문제 분석 ○ 관련 기관/단체와 수시 간담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 정부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확정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NGO/관련단체와 협의 ○ 공청회/ 청문회 ○ 우선순위/ 특별중점사안/ 취약계층 요구 사항 등 파악 ○ 국가의 다른 정책 계획과 연계 수립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실행 일정 구상 ○ 이행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의 세부계획 작성 ○ 집행기관 간 공조 유지 ○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언론홍보 전략 ○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보고 형식 개발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의 평가 ○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국회 또는 대통령에 모니터링 결과 특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 보고서 구상 ○ 심의협의회 구성 ○ 국회 또는 대통령에 특별보고 ○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 준비 ○ 차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새로운 분야 기초 조사
	주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 부	정 부	정부/국가인권위원회
자문 기관	정부/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정부/시민단체	

- ※ 위의 표는 유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핸드북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과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임
- ※ 개발 및 이행단계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정기구는 정부가 구성·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참석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준비단계, 모니터링단계,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시 고려사항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의 시급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실행을 위한 부처 간 업무 관할권과 업무 중복성 관련 문제 해결 능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의 참여보장

I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구성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의의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근거

-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기관으로 조정됨(2003. 10.)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3. 제3기 인권NAP 권고 추진과정

-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실무협의(2016. 6.)
-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가. 배경

-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
-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나. 구성 및 체계

1) 전체구성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2)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3)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 인권교육 강화
-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IV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 필요성

1.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수립 이후, OECD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인권항목을 포함하고, 2013년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하는 등 국제 사회는 각 국가에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촉구하고 있음

2. 외국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현황

- 영국 등 17개국¹⁾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이미 수립하였고, 일본 등 23개국²⁾ 정부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추진 중이거나 수립하겠다고

1) 영국(2013), 네덜란드(2013), 이탈리아(2014), 덴마크(2014), 핀란드(2014), 리투아니아(2015), 스웨덴(2015), 노르웨이(2015), 콜롬비아(2015), 스위스(2016), 이탈리아(2016), 미국(2016), 독일(2016), 프랑스(2017), 폴란드(2017), 스페인(2017)

2)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체코, 과테말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요르단, 케냐,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레

선언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이 확산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자국 기업들의 지속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고 있음

3.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 채택

- 2017. 6. 23.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4호를 채택하였고, 2017년 10월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 최종견해에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음

4. 2017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

-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고용창출과 균형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규정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음

5. 독자적이고 실효적인 기업인권 NAP 수립

-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고, 2017년 G20 정상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언 사항

- 인권NAP 수립 시기의 문제 : 지연문제
- 광범위한 의견수렴 문제
- 독립적인 기업인권 NAP 수립 문제



| 제1부 | 자유권 분야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절차**
나현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정보인권**
오길영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생명권, 신체의 자유 부분 검토

나 현 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 사형제도 개선

◎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3차 NAP 초안의 내용

- 사형제의 위헌성 검토
 -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 사회현실, 해외 입법례 변화 등 지속적 검토
-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
 - 개별 처벌 규정상 법정형으로 사형을 두고 있는 범죄 유형 파악
 - 개별 처벌 규정상 사형이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무기징역 등으로 법정형 조정 필요성 검토

◎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3차 NAP 초안은 1, 2차 NAP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3차 NAP에서는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필요함.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15년에 걸친 계획에 매년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포함되는 것은 곧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징표로 보임.

2차 NAP에 대한 ‘연도별 이행상황 보고’들(2012년, 2013년, 2014년)을 살펴보면, 사형제의 위헌성 검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민간의 여론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고, 개별 법정형

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에 관해서는 이행상황 보고에서도 아예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계획 이행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과 해외 입법례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1차, 2차 NAP와 동일한데, 사회현실과 해외 입법례의 경우는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해외 사형폐지국에서 폐지 전후의 여론 양상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해외 사형폐지국의 대응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사례 분석 등이 계획에 포함할 필요 있음.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사형을 전면 폐지하였는데, 이 국가들 중 사회 여론이 사형폐지에 우호적이었는지 아닌지, 사형폐지에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실현한 국가들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사형폐지에 이르렀는지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제가 NAP에 반영될 필요 있음.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 역시 1차, 2차 NAP와 동일한데, 개별 처벌 규정상 법정형으로 사형을 두고 있는 범죄의 유형에 관하여는 그 범죄가 실제 어떤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한 범죄의 발생률은 사형집행 중단 이후 연도별로 어떤 추이인지, 법원의 양형은 어떤 수준인지, 사형 구형 또는 사형 선고의 빈도, 사형에 근접한 형벌인 무기징역 구형 또는 선고의 빈도, 유기징역인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선고되는지 등에 관한 통계들에 입각하여 개별 처벌 규정별로 사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NAP에서 입안할 필요가 있음.

1심 형사공판을 기준으로 하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18건의 사형선고가 있었고, 그 중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은 20건의 사형선고가 있었음. 최근 수년간 검찰은 매년 10건 이상을 사형을 구형하고 있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들은 더 많음. 이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범죄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연결할 필요 있음.

◎ 절대적종신형에 대한 검토를 3차 NAP에서도 지속할 필요 있음.

절대적종신형에 관해서는 1차 NAP에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었다가 1차 NAP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절대적종신형의 위헌성, 장기수용에 따른 예산문제 등 부정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사실상 추진에 대한 거부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음. 이후 2차 NAP부터는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연도별 이행상황 보고에서는 검토 내용이 전혀 없고, 이번 3차 NAP 초안에서는 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절대적종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종신형 제도가 그 자체로 무오류의 제도라는 것은 아님. 절대적종신형 제도에 내재된 위헌성의 문제는 현재의 무기징역 제도에 비해 더 엄격한 석방조건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어떤 경우든 석방이 가능하면 절대적종신형이 아니라거나 어떤 경우에도 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종신형이 아니면 사형폐지는 불가하다는 관점은 불필요함.

예산문제는 인권신장에 뒤따르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로서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아쉬운 관점임.

II 교정시설 문제에 의료제공 개선 과제를 추가할 필요

◎ 3차 NAP 초안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과밀화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과밀화를 비롯한 열악한 수용상태로 인하여 초래되는 건강침해 및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인 의료제공 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교정시설의 의료제공 실태

2016년 9월 30일 기준, 전국 52개 구금시설(수용인원 약 5만 7천명)의 전체 의

료인력 현황은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로 보면 의사는 79%(정원:104, 현원:82), 약사는 85%(정원:13, 현원:11:), 간호사는 98%(정원:103, 현원:101)(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2016)에서 인용). 수용인원에 비해 전문 의료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설정된 정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음. 게다가 설정된 정원은 교정시설의 현재 수용인원에 기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정원에 기반하여 설정된 것인데 과밀수용인 현재 상황에 비하면 부족분이 더 커짐.

수용자들이 치료를 원하는 진료과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의 경우는 전부 공보의, 외부 촉탁의가 감당하고 있고 교정시설 내의 치과 전문의는 없는 실정임. 수용자들의 건강에 관하여 가장 관심을 못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비율의 발병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인데 정신과전문의 역시 교정시설 내에 전문의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음.

교정시설 내의 부족한 의료진과 의료시설로 인해 외부진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나, 외부진료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1일 정도로 너무 오래 걸리고(「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2016)),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외부진료 비용을 전액 자비부담하거나 상당 부분을 자비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 근본적인 문제인 교정시설 과밀화가 해소되어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으나, 과밀화 해소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과정에서 계속 침해될 수밖에 없는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임 필요함.

교정시설 내의 의료진의 정원을 과밀 수용된 현재의 인원에 맞게 늘리고 정원에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할 필요가 있고, 누락된 전문 분야 진료과목들도 필요한 만큼 갖추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종합적으로는 교정시설 내의 의료를 최소한 민간의 1차 진료기관 수준으로 진료과목과 의료진 및 의료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외부진료의 비용부담 문제는 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정지제도

에 대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급여정지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음(2003헌마31).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교정시설 내에서 충분한 의료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보험급여정지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환기시키고 있음. 정부는 연간 외부진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외부진료예산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 및 증액하는 조치가 시급함.

III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대책

◎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대책에 관한 3차 NAP 초안의 내용

- 보호기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보호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마다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병치료, 체불임금,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 및 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
 -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간 단축

◎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대책은 2차 NAP와 동일한 대책으로 3차에서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음. 행정상 구금에도 중립적 기관의 심사, 청문절차, 출석진술권의 보장 등 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임.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에도 최소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나 현재 보호제도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문의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이론상 무기한 구금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많음.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고, 보호개시 단계에서 출입국 관서장이나 외국인관서장 등 법무부의 소속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보호연장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을 뿐임.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나 관계인의 진술청취도 그 실행 여부나 형식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대면 진술청취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보호개시나 보호연장 절차에서 청문절차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처럼 위헌 소지가 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만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NAP에 반영될 내용으로서는 크게 부족한 면이 있음. 위헌 요소를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NAP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한 보호기간 단축의 문제점

난민심사 기간이 길어서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실정에서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보호기간 문제만을 고려하는 단면적인 조치이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기회를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신속한 난민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NAP에 반영할 필요 있음.

Ⅳ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 청구의 적용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사람은 제외되어 있음.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될 때, 인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되는 자를 제외하는 것은 당시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 당시 법무부의 논리는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절차일 뿐, 강제퇴거명령에 수반되는 보호조치를 다투는 절차가 아님.

이는 형사절차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형사절차에서 체포, 구금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으로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의 독립된 절차임. 형사소송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구금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자체가 체포, 구금의 부당성을 따지는 절차는 아니고, 또한 형사소송은 장기간의 절차임.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보호’ 자체를 다투는 사법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도 오랜 기간이 걸림.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형사절차에서의 형사소송과 같은 것일 뿐,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 자체를 다투는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무엇보다 신속한 인신구제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보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의 보호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인신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을 사법기관이나 혹은 준사법기관에 의해 발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이렇게 개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위헌성이 완화되는 동시에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약간 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 출입국관리법의 문제 외에도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는데(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보호되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제도의 적용 여부), 기본적으로 인신구금에 대해 ① 사법기관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독립기관에 의해, ② 구금 자체의 당부를, ③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개별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안의 감춰진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인신구금들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V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보호’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한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에게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임(제1조~제5조). 여기서 ‘보호’는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의미할 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에 필요한 적법절차 기준들을 당연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그것이 미진한 탓에 위헌으로 판정되기도 하고,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 그러나 현재의 실태를 보면, 탈북민이 범죄자인지, 간첩인지, 진정한 정착 목적이 없는 경우인지, 정착시키면 정치외교적 곤란함이 있는지 등 법률상 보호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탈북민을 사실상 구금하여 국정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는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는 수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

국정원은 동의를 얻은 보호임을 주장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은 비록 동의를 얻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음.

◎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탈북민을 ‘보호’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상 구금에 해당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행정상 구금에 요구되는 적법절차원리가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음.

보호 여부의 판단을 사법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독립기관이 개입하는 과정 없이 통일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탈북민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도 없음.

수사의 성격이 있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형사법에 의한 절차적 권리(영장주의, 변호인조력권, 진술거부권 등)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그러한 권리의 고지절차도 없음.

현재 보호기간의 상한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장기이면서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탈북민의 평균 수용 기간은 70일 정도이고 그 중 실

제 조사기간은 7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처럼 실제 조사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전면 박탈한 구금상태를 수십일 이상 유지할 이유는 없고 180일이라는 장기간의 상한을 둘 이유도 없음. 1~2주의 단기 조사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이나 독립적 준사법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 연장을 허가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최장기의 상한도 60일이나 9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견은 현재의 운영 실태에 기반한 것으로서 범죄혐의가 있어 장기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형사절차로 전환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절차를 진행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

이처럼 사실상 구금의 근거 법률인 북한이탈주민법은 법률 자체로 여러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헌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함.

- ◎ 북한이탈주민센터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착지원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와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일부의 소관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탈북민 일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모든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고, 국제형사범죄나 간첩 등의 혐의가 조사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상자만을 국정원으로 이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자유권분야 중 정보인권 부문을 중심으로

오길영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I 검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1차 NAP의 시점에 즈음한 정보인권 부문의 이슈는 주로 온라인 사회의 체계 수립을 둘러싼 거시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즉 온라인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이슈이거나, 정보 자체에 대한 가치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반영한 이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과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주로 공법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소위 1세대 네트워크 시대의 대표적인 담론 주제들이다. 물론 현재까지도 그 논의의 근간이 지속되고 있는 본질적·중추적인 ‘사이버 인권요소’들임은 자명하다. 한편 제2차 NAP의 시점에 즈음한 정보인권 부문의 이슈는 다층·다면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네트워크의 사회적 영역과 역할의 확장을 반영하여, 제1차 NAP에 비해 세밀하고도 실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접속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모바일 환경이 종래의 유선 네트워크의 기능에 더해지자 중층적·복합적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명제 기반 또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등 아날로그식 개인정보 체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시키는

문제점에 대한 거시적인 대책의 강구, 정보의 수집 및 통합과 관련한 솔루션이 혁신되면서 우려되는 거대정보의 생성에 대한 대책 강구, 그리고 제1차에서 지적되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중추적 인권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권분야 가운데 정보인권 부문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와 발맞추어 나가는 양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관련이슈의 진행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인권 부문은 인권관련 부문가운데 그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수요의 발생시점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담론의 형성 시점이 사실상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정보인권 부문의 특성상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연성이 현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크고 장기화되는 인권 공백의 현실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ICT 기술은 모바일의 상용화단계에 있어 정점으로 치달고 있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소위 ‘1세대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선시대를 지나 ‘2세대 네트워크’인 모바일 시대를 달리고 있는 동시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이미 대대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즉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전지구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실현과 IoT(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등 본격적인 센싱 네트워크(Sensing Network) 시대의 개막이 이미 목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현실은 아직 1세대 네트워크 시대 또는 그 이전인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바, 현실과의 괴리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때의 담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의 흠결을 틈타 ICT 기술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이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과 사이버 사찰여론이 뜨거웠던 소위 ‘카카오톡 사건’이 그러하며, ‘스노든’ 사건에서 바라보듯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 이슈의 이면에는 이를 통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환언하자면 결국 인권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차세대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요청이 이미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즉 법제도의 입장에서는 2세대 ICT에 제대로 대응해볼 겨를도 없이 바로 3세대 이슈에 몰입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재 ICT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현실은 ‘공백’ 그 자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ICT기술의 양상이 법제도적 담론형성이 자리를 잡기도 이전에 이미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모해가기 때문에, 그 공백의 크기가 여간해서는 줄어들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제3차 NAP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금번 제3차 NAP의 초안 역시 그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인권위의 NAP 권고안이 설정한 많은 과제들이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정부NAP의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 미반영이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해당 기관의 입장이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초안만을 두고 보자면 정녕 우리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정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라면 굳이 인권위의 권고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렇듯 각자의 나발을 각기 따로 불 것이라면 말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 금번 제3차 NAP의 초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구체적인 검토

1.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부문

제3차 NAP 초안(이하 초안)은 이 부문에 관하여 총 7개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① 보안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적극 추진, ②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③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상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⑤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⑥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⑦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①을 제외한 6가지 이슈를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¹⁾

1)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 23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²⁾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초안은 2016년 5월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정을 제3차 NAP기간 내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항목으로 적시해두고 있다.³⁾ 이는 마치 주민등록 변경제도를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으나,⁴⁾ 기실 종래의 주민등록법 체계, 즉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미 일단락 된 것이다.⁵⁾ 따라서 이미 입법이 되어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법규의 ‘제정’을 통한 국가인권정책상의 ‘계획’으로 볼 수는 없는

1) 보안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2차 NAP 실행에 있어서 2012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3회 개최, 피보안관찰자 전원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한 점 등이 보이나, 전반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자유권 분야), 2015년도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5.12., 167쪽.

2)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68 결정.

3) 법무부,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58쪽.

4) 초안의 본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2016년 11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대한 검색으로 찾아볼 수 없고, 당해 규정의 내용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7조의4 및 제7조의5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2조의5-제12조의6-제12조의7-제12조의8-제12조의9-제12조의10-제12조의11-제12조의12-제12조의13-제12조의14-제59조-제60조 및 제60조의2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4조 등이 그것이다.

바, 이는 어디까지나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의 설정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초안은 정작 필요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즉 이미 일단락 되어 버린 법규의 ‘제정’을 적시할 것이 아니라,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방법을 밝히고 이를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라는 새로운 처방이 어떠한 효과를 거둬들일지 궁금하다. 기존의 주민등록제도가 야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일소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최소한 주무기관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초안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를 제2차 NAP의 이행 경과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⁶⁾ 그렇다. 주민등록번호의 병폐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해온 바 있다. ‘PIN’이라고 통칭되는 대체수단을 보급하기 위하여 힘써 온 바 있고, 소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시행이 또한 대표적이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해당 대체수단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My-PIN).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방안’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아이핀의 발급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201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어 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시스템의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체가 결국 본인확인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사기업에게 본인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의 주요한 사회적 부담을 위임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난을

6) 법무부, 앞의 글, 57쪽.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체제의 본원적 구조상 그 인증의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사기업이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소위 본격적인 데이터-엔지니어링 시대를 맞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이렇듯 위험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합헌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금번 제3차 NAP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남용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책으로 등장한 바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살피기로 하자. 이는 원칙상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적 수집이 불가능하고, 법령상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마련한 것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영역 자체를 규제하고자 했던 것이 입법 취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령에 관련 정보의 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수집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입법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1월 기준 866개이던 것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직후인 2014년 10월에는 1,114개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272개로 집계되어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 스스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직전에 안전행정부 공고(제2014-237호)를 통하여 13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기도 하였다.⁷⁾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었으니, 그야

7) 심우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10, 국회입법조사처, 37쪽.

말로 교각살우(嬌角殺牛)의 경우가 아니겠는가? 부끄러우나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재의 우리네 모습인 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다. 즉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금번 제3차 NAP의 새로운 과제로 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한때 뉴스의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전자발찌’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의 64% 정도가 그 착용이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수치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불편함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취미생활의 포기 및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⁸⁾ 한편 전자발찌 부착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게 되는데 …〈중략〉…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⁹⁾ 즉 형벌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적어도 피부착자가 ‘처벌’이라고 인식하여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금번 초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 및 일체형 전자발찌 등을 통하여 위치관리 대상자의 생활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어, 일견 이는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제2차 NAP의 이행 경과에 있어서도 역시나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배터리 성능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형화를 추진하고 착용감의 개선으로 생활편의성 증대에 힘써왔다는 것인데,¹⁰⁾ 실제 보호

8) 조윤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2009년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143쪽 각주38 재인용.

9) 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5헌바35 결정

1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173쪽 및 법무부, 앞의 글, 57쪽.

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이의 인터뷰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이라 문제이다. 즉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보완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전자발찌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피부착자가 발목부위에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실제의 상황을 밝힌 바 있다.¹¹⁾ 물론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본고의 성질상 논외의 일이 되겠다. 그러나 최소한 NAP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기관은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편 오늘날 ICT 디바이스의 발전에 비추어 보자면, 위치추적이라는 매우 단순한 기기의 성능확보를 위해 굳이 전자발찌의 크기를 키워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어디까지나 훼손가능성을 막아내고 비용의 문제를 고려했을 터인데, 친인권적이면서도 부착의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는 절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무기관의 현실적인 과제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초안은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오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시킨다는 것과, ②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되고 재범이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등록면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별다른 이견 없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처방적인 노력으로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를 어느정도 최소화 시킬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이중처벌의 문제, 법의 형평성 위배, 연좌제금지의 사실상 위배가능성 등으로 지속적인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¹²⁾

헌법재판소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02헌가14 결정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

11)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144쪽.

12) 이 제도에 대한 현실적 회의론 또한 만만치 않다. 2013년에는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바 있는 미국에서조차 효과의 미비 또는 더 큰 부작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합헌의견은 4명, 위헌의견은 5명으로 위헌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던 것이라, 위헌이 다수의견이라는 점에서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도자체가 이미 회피할 수 없는 침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화 노력도 현실적으로는 타당하겠으나, 제도 자체의 폐지나 본질적 개선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NAP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4)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참으로 긴 과제명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참으로 간단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서 유의미한 부분은 ‘법제 정비’ 뿐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도대체 어떠한 법제를 어떻게 정비하여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규제하기가 매우 곤란하게도 복잡·다단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디바이스들과, 제1차 NAP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온 바 있는 CCTV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보편적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 또한 구체적인 침해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표현이기도 하다. 내용상으로는 영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목상에 ‘녹음기기(스마트폰)’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성녹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염두에 두고 간략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NAP가 전공자에게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초안의 내용만을 두고 볼 때에는 그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될 뿐, 이 내용만으로 제3차 NAP의 추진과제 또는 이행방안으로서 그 실체를 파악해 내기는 불가능하다. 충실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잠시 지면을 빌어 동 법안에 대한 소견을 밝히자면, 당해 법안이 이 과제의

법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으로 많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인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법안이 발의된 현재의 시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파악되는 눈앞의 디바이스들을 기준으로 규제를 시도하다 보니, 추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상정보의 형태까지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ICT 관련 입법은 항상 기술의 속도와 다양성을 미리 고려해야만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내 사문화되거나 의도치 않게 오·남용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제법 오래되고 나름 유명한 말이 있다. “정부의 규제시도는, 특히 그러한 규제가 기술특유적인 범주라면, 입안될 당시 이미 낡은 것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 말을 한번쯤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다.¹³⁾

5)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이 또한 초안의 내용이 간단하기 그지없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유의미한 부분은 역시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한다는 이 부분 뿐이다. 그야말로 밀도 끝도 없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느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한다는 것인지, 나아가 ‘점검’이라는 것이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냥 어쨌건 ‘잘’ 해보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봉착하게 되는 난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추적인 권리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만약 정보주체나 정보의 관리자조차 그러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되는가?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¹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진정한 ‘클라우드’란 정보의 생

13) Government attempts to regulate are likely to be outmoded by the time they are finally enacted, especially to the extent such regulations are technology-specific: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of 1997, US, Principle 2.

14) 이에 관한 상세는 오길영,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안’의 검토와 비판, 민주법학 제5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산관라·취급자는 물론 실제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조차 해당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몰라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효율이 높은 ‘클라우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저장은 당해 저장의 시점에 전 지구적으로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 공간을 자동으로 찾아 저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슨 수가 있어도 찾아야 한다면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비용과 효율의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어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실제의 저장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대상정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정보주체가 있다면, 그가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즉 개인정보에 대해 ‘자기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해당 법률 또한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다.¹⁵⁾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¹⁶⁾ 국가의 명칭을 알아서 무얼 하는가 하는 필자의 질문에, 입법당시의 관련자는 ‘알 권리라도 보장하는 것이 어디냐’는 답변을 해 온 기억이 난다. 이렇듯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새로운 누수현상을 초안의 말씀처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점검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도 잠깐 생각해 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모두 인터넷 주소와 필요한 센서를 가지고 출시된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전등도, 보일러도, 심지어 화장실의 변기까지도 인간에게 유익한, 그리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일단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둘러싼 정보로서, 일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정의규정상의 ‘괄호 안’의 정보에 포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내밀한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기가 수집하게 되는 혈당정보와 몸무게 및 체온에 관한 데이터는 아마 ‘민감정보’¹⁷⁾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

2014, 250-251쪽 및 253-257쪽.

1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16)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동법 제2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등장하는 ‘반환’과 ‘파기’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신 소유의 스토리지상의 대상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대상정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자체가 ‘임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외국 어딘가에 있을 대상정보의 사본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어찌해 볼 도리는 없다.

17)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떠한 경우이건 항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 특히 번거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해줘야 한다.¹⁸⁾ 즉 번거에 앞을 때마다 우리는, 휴지가 아니라 동의버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하루에 해줘야 할 동의가 몇 번이겠는가? ‘클라우드’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렇듯 너무나 많고 잦은 자기결정권 실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마땅하겠는가? 이들은 아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다른 쟁점이 되거나 맹점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앞에 나타날 문제들이다. 단순히 기존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6)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오늘날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행태를 살펴볼 때, 이 과제는 그야말로 중요하고도 절실하다. 점차 지문으로 인증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간단한 행정사무나 출퇴근의 체크도 생체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홍체는 물론 성문으로부터 안면형상까지 점차 그 대상이 되는 생체정보의 종류가 늘어가고 있다. 나아가 생체정보의 특성상 침해 또는 유출의 경우 실로 심대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그 구제책 또한 난감하여, 많은 논란이 담론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과제는 현재로서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초안은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가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대책을 다시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설명 부분은 어떠한가? ‘안전 조치의무’가 있다가 끝인데, 그 다음이 없다. 다들 알아서 안전하게 잘 조치하며 사용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제3차 NAP의 내용 전부란 말인가? 간략히 살피도록 한다.

먼저 인증수단으로 생체정보의 활용이 별로 특별하지가 않다. 공인인증서와 동

18)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일한 접근매체로서 동일한 법적효과를 가지도록 이미 기입법¹⁹⁾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체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데 대통령령은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규정²⁰⁾하고 있어, 생체정보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흠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유식별정보이기도 한가?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4가지만이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체정보는 그냥 개인정보일 뿐이다. 이메일주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인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본격적인 생체인증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흠결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생체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전송 또는 생체정보의 집적(DB화) 등은 심각한 후유가 예상되는 바, 이를 기타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가 있다고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생체정보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입법의 필요에 의해 남발되는 방식으로 규정되다 보니 사실상 생체정보의 명확한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흠결되어 있고, ‘전자서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라는 간단한 언급만이 존재한다.²¹⁾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의 유형으로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²²⁾ 이러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바이오정보’가 등장한다. (구)정보통신부가 2007년에 제정한 바 있는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이오 정보’를 “지

19)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라목.

20) 동법 시행령 제18조.

21)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2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라문.

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뒤이어 정보통신방법 시행령의 2009년 개정에서 다시금 ‘바이오 정보’가 등장하였다. 정보통신망에서 생체인식 정보가 송수신되는 경우 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이러하니, 사실상 제3차 NAP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결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부문

제3차 NAP 초안은 이 부문에 관하여 총 7개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①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②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③ 소위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④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⑤ 집회 시위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적 운용, ⑥ 아동과 청소년의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⑦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과제(①, ④, ⑦)를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도록 한다.

1)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초안은 이에 대하여, 국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즉 부동산정보, 교통사고정보, 실시간 버스정보 등 생활편의 미치 국민안전과 밀접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date.go.kr)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오픈포맷 비중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데이터가공시대가 도래한 지금의 시점에서, 참으로 타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창조경제'의 키워드였던 '빅데이터(Big Dta)', 전공용어로는 '데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사조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 국민에게 유익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고품질의 형태로 수준관리를 해주기까지 한다면 더없이 감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인권적 측면에서 살펴더라도, 또한 권익증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함은 자명하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정부가 앞장서서 고가치·고수요로 관리·제공한다고 해두자. 그렇다면 더욱, 아니 더더욱 고가치·고수요인 민간부문의 데이터는 어찌 되는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찌하고 있는가? 빅데이터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부문의 데이터이고, 이러한 민간부문의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바람직한 역할을 해온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²³⁾을 발표하면서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바 있고, 연이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도 비식별화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²⁴⁾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별반 달라질 것이 없으니, 무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 된다. 소위 ‘비식별화’의 가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채로 그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양쪽 다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사업을 증진시켜볼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신뢰한 기업들은 데이터 가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식별의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가 ‘우왕자왕’하는 사이에, 피해자만 늘어난 꼴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간부문의 데이터 가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차원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지, 공공부문 데이터의 수준관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데이터는 그 오용시 그야말로 직접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²⁵⁾ 더더욱 시급하기도 하다. 따라서 금번

23) 방송통신위원회, 2014.12.23자, <http://www.kcc.go.kr/download.do;jsessionid=U62wpHCyDuDqKZ7057BSF0HQA62bShPp1x1WtvcvSzR2hAaT6qOc1701vd5kmmMg.hmpwas02_servlet_engine1?fileSeq=40159> 검색일: 2015.4.21.

24)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2015.1.5자, <http://privacy.nia.or.kr/sub/notic/notice_view.asp?idx=74&cpage=1&searchKey=&searchWord=&bdDivCd=ED&mcd=10> 검색일: 2015.4.21.

25) 이에 대한 상세는 오길영, 데이터 비식별화 논의의 쟁점과 맹점,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2016.

제3차 NAP에서는 이 또한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반드시 해결해내어야 할 것이다.

2)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초안은 이에 대하여, “스마트 폰 등 스마트 기기 확산에 대응,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모든 법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포털, ICT 제조사와 협력하여 공익광고, 세미나,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할 수 있고, 더욱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ICT 환경에 부적응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보낼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제가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랭크될 정도로 중차대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영역에 있어 이보다 훨씬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여론조작이 진행되었다는 뉴스가 방송가를 달구고 있다. 사찰과 프로파일링, 통신데이터의 남용과 잔존하는 도감청 오용의 현실은 어찌하여 초안의 내용상에는 보이질 않고, 통신 UI(User Interface) 개선 문제가 랭크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 UI와 같은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실현을 이유로 그 획일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이 과제는 그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인 이슈이다. ISP의 임시조치의 문제,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슈,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터넷 실명제의 잔존. 굳이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숙성된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별다른 검토나 설명이 필요 없이, 누구

나 쉬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이렇듯 곱삭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는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국가보안법 제7조의 경우처럼, 여간해서는 꼼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차원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환언하자면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행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금번 제3차 NAP의 기간 동안, 이들의 문제가 일소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보기로 하자.

III 검토를 마치며

제3차 NAP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가장 큰 고민은, 인권상황의 분석과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다. 많은 인권관련 주제들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NAP 선정과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선해한다고 하여도, 양자는 ‘합주’는 그야말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합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것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 비싼 세금을 들여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많은 이들이 그 사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간략히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의 NAP가 대단히 타당한 것도 아니다.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은 숨길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초안을 검토하는 내내 정부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심지어 우리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특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정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정보의 가공(즉 비식별화) 문제나 디지털 증거의 문제, 디지털 통신 데이터의 남용과 디지털 도감청의 오용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왔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모두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다. 전공자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주제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듯 외면으로 적당히 버티어 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슈들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들이다. 즉 더 이상의 지연이나 방치도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 유의미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야만 한다. 금번 제3차 NAP를 계기로, 우리네 인권현실의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그 실천을 기대해 본다.



| 제2부 | 장애, 이주 분야

- **장애인의 권리**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 **이주민의 권리**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장애인의 권리

노 경 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I 생명권

1. 장애인 자살

OECD 국가 중 수년째 자살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권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2017~2021)에서는 장애인 자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19.9%의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장애인보다 매우 높은 편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자살의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의 경우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예	18.2	27.9	19.9	16.2	13.4	6.6	-	34.9	27.9	37.3	33.8	25.2	16.4	44.0	32.3	19.9
아니오	81.8	72.1	80.1	83.8	86.6	93.4	100.0	65.1	72.1	62.7	66.2	74.8	83.6	56.0	67.7	8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무응답 제외)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1.5%가 있다고 응답하여 많지 않으나 최근 생활고, 무의미한 제도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뇌전증장애와 장루·요루 장애, 정신장애의 시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예	1.3	1.4	1.4	2.1	-	-	-	4.5	2.5	-	4.0	-	-	6.6	7.4	1.5
아니오	98.7	98.6	98.6	97.9	100.0	100.0	100.0	95.6	97.6	v	96.1	100.0	100.0	93.4	92.6	9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4,287	277,883	270,572	272,151	19,622	140,238	7,193	103,792	71,876	8,003	15,984	11,839	2,560	16,705	8,849	2,561,555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무응답 제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 응답자 583명 중 68.8%(401명)가 척수 손상 뒤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자 중 32.0%(115명)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원인은 삶의 의욕 상실이 50.4%(2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밖에도 신체적 장애, 정신과적 증상,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직장 관련, 학교 관련 등의 응답이 있었다.(2015년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

〈표 3〉 척수장애인 자살 총동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유	401	68.8
무	182	31.2
합 계	583	100.0

〈표 4〉 척수장애인 자살 총동 원인

구분	빈도(명)	비율(%)
삶의 의욕 상실	202	50.4
신체적 장애	162	40.4
정신과적 증상	72	18.0
경제적 문제	49	12.2
대인관계	42	10.5
직장 관련	11	2.7
학교 관련	2	0.5
합 계	540	100.0

〈표 5〉 척수장애인 자살 시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해봤음	115	32.0
안 해봤음	244	68.0
합 계	359	100.0

이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자살과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장애인 자살사고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중 자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 자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장애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애인 자살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살 예방 대안으로 첫째,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줄이고 대인관계를 통해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

둘째, 대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장애인 자살 사례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

셋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게이트키퍼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재활병원 의료진, 복지관 심리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넷째,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상담 혹은 가족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다섯째, 중증 장애인의 개인적인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동료들 통한 동료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을 통한 자살 예방으로는 첫째,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통해 자존감, 책임감 등을 높여 심리적 정서적인 부적응 상태 최소화. 둘째, 최중증 장애로 인해 직업활동 유지 어려운 자에게 직업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셋째,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시설의 확대. 넷째,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으로는 현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서비스에 따른 적격성을 설정하여 장애인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과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소득이 아닌 장애인 본인 소득 정도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제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급여 체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 양, 적절한 수가 등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업의 기회, 취업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2. 모자보건법 낙태의 범위 재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현행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조항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장애가 유전 될 수 있다는 편견과 장애는 두려운 것, 피해야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며, 장애 태아의 낙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아는 출산을 금기시하도록 국가가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태어나서 안

될 존재로 되거나, 장애인은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 장애인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구축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으로 장애아동에 지원 및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제한이 있는 뇌성마비와 같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고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인권 침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으며, 연령,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잔존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있음에도 소득기준, 연령제한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장애인 전체 3.3%에 비해 지적장애인 68.8%, 자폐성장애인 91.2%가 대부분 부모 등 가족에 의한 돌봄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여가생활 등 개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계속되는 장애인 가족의 자살과 가족해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장애의 조기발견 시기부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및 지원체계 확대

서비스 이용 자격을 현행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언어, 시각, 청각)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을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 자격 부여 등 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서비스 지원금액 또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치료사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장애인가족지원 강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애등록 인구는 2,490,406명, 장애인 가족은 750만 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삶 구현을 위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여가활동의 부족’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가족구성원은 심리적·신체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빈약할 경우 만성 우울이나 극심한 사회적 소외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그 결과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 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결과, 자폐성장애 61%, 지적장애 45%, 지체장애 39% 순으로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족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또는 사회적 지지가 풍부할수록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부모의

양육 경험, 비슷한 아픔을 겪은 감정의 교감을 통한지지,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가족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70여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계획 및 지원으로 각 지역마다 서비스 종류, 질 등의 편차가 심하다. 장애인 가족의 욕구 반영과 효율적·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부모 장애인식 의무교육 실시 및 부모동료상담을 연계하고 시·군·구별 각 년 2회 이상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한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기준을 150%이하로, 한명의 아동 당 연 480시간을 장애인활동지원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연 3,300명에 한정된 지원에서 연 10,000명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현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중심의 휴식지원을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문화·여가 바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찾아가는 장애인부모동료상담지원

2019년까지 17개 시·도에서 부모동료상담사를 양성하고 시행한다. 부모동료상담사 양성기준은 이론 120시간, 실습 180시간으로 하고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중앙센터 및 시도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2022년까지 시군구 센터를 설치·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그 근거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한정하여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사용연한을 두어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고나 고장에 대해 재신청할 수 없고 유지관리비 지원이나 자신의 몸에 맞도록 튜닝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다. 더군다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체가 발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육상태에 따라 보조기기를 제때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사용연한으로 대상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장애아동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연한 폐지

– 사용 중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재신청 허용

– 중앙정부 차원의 유지관리비 지원

– 자신의 몸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III 여성장애인

제2차 계획 및 이행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에 대한 모성권만을 다루었다면 제3차에서는 모성권에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호가 추가되었고,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추진과제가 확대된 것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지만 아직도 여성장애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1.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체제로 인해 여성과 장애, 빈곤이라는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으나 여성장애인 정책 설계에 있어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와 여성으로 받는 차별이 이중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 한 여성장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전체 여성장애인 중 21.0%가 무학으로 4.7%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여성 36.8%이며 남성은 23.0%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여성장애인 14.2%, 남성장애인 17.7%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여성 19.3%, 남성 34.5%였다. 대학 졸업 이상은 여성 8.6%, 남성 20.2%로 전체 여성장애인 중 72.0%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서 여성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1.4%)과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

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장애인 (180만 2000원)의 40%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용경험이 낮고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그동안 관련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소외되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극심한 빈곤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추진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관련 법령 등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추진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
-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설치하여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
- 여성장애인 고용 및 노동권 확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예산 확대지원 및 가칭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설치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장애인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
- 장애 관련 모든 통계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 여성장애인 현황 관련 지표 구축 및 성인지 예산 작성
- 여성 장애인 양적·질적 실태조사 실시
- 장애 및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장애인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 분석·연구
- 여성장애인 단체지원

2.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201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장애인구 2,449,437명 중 여성이 1,029,146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5%,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9%에 불과하며, 고용률 역시 전체 장애인은 37.0%인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21.0%로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2.4%,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가 28.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1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많고, 여성장애인의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가 많으며, 같은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더 열악한 노동여건에 있다는 것이며, 급여수준 또한 여성장애인의 3개월 월평균 임금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이 46.9%인데 비해,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22.5%에 불과 하였고 월평균 임금 또한 남성장애인이 180.2만원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74.3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95.1%이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57.6%가 가장 높지만,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도 19.1%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계획에서 제시된 여성장애인에게 특화된 훈련 직종 개발 및 운영, 여성장애인을 위한 고용 적합 직종 개발, 민간 위탁 훈련기관 운영평가 시 여성장애인 참여율 및 취업률 반영, 고용지원자금 용자 및 무상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5% 범위에서 가산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시 여성장애인 가산 지급,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선정 시 여성장애인 우대,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지원 및 장애인고용 관리비용 지원 시에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우대 등의 주요 정책이 발 빠르게 반영되어 여성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 제도 도입

여성장애인은 스스로의 재생산권 능력에 대해 의심받음으로써 여전히 가족에 의해 재생산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산전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특수한 조건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이다. 반면 여성장애인 중 유산 경험은 48.4%, 주위의 권유로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가 46.6%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 모성권·건강권 보호에 있어 출산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에는 적극 동감한다. 하지만 출산비용만을 지원해서 모성권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출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전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 산후 관리 및 상담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부담은 장애를 떠나 모든 여성들에게 불안의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때 장애여성의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따라 임신에서 출산, 출산에서 양육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 하지만

정작 정보를 얻을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의료진의 장애감수성,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여성장애인 전문 지정 산부인과’가 필요하며, 의료진과 여성장애인의 심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조건이다. 더불어 산후조리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홈 헬퍼 서비스, 육아도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IV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1. 인정조사표 개선 및 65세 이상 장애인 선택권 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재심사 시 등급 변동이 잦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지 2년이 경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심사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실시되었고, 1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지원 서비스 재심사 결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등급 하락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등급 하락자 중 33%가 시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

해서는 먼저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인정조사표를 근거로 시간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인정조사표는 스스로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의 생활능력 및 욕구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 되어 운동장애가 없는 다른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은 낮은 시간관정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간관정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인들은 대폭 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체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에는 급여량 및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본 급여로 1등급 약 118시간, 2등급 약 95시간, 3등급 약 71시간, 4등급 약 48시간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급여인 최중증 1인 및 최중증 취약가구(274시간), 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8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2시간), 출산가구(80시간), 자립준비(20시간), 직장생활(40시간), 학교생활(10시간), 보호자일시부재(20시간), 마너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등(73시간)까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부가적으로 지자체별 추가지원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65세 이후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활동지원급여에서 노인장기급여로 자동 전환되어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된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연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65세 이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없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자부담도 높고 바우처 시간도 적기 때문에 65세 이상 신규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하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 내 노인돌봄서비스는 활동지원 서비스보다 적은 판정시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은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활동보조인의 자질 향상, 활동보조인의 저임금, 이용료 자부담 등을 꼽을 수 있다.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선

장애유형(감각장애 및 정신적 장애) 및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발 및 수급 자격 갱신제도 개선

- 65세 이상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

65세 이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선택 가능한 선택권 보장

2.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 권리보장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결정의 문제점과 충분한 재정지원의 보장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당사자 욕구에 비해 미흡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6,534명, 지원인력 58,102명, 제공기관 932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신청자격의 제한(1~3급) 등 장애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이 다소 증진되기는 했지만, 이용자의 폭넓은 서비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다.(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시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용자의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됨)

- 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및 급여 확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제한(1~3급)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급여 이용범위와 바우처 생성주기를 확대하고, 단가 차등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활동보조급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활동보조서비스 품질 보장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V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치

특수교육 대상자의 적절한 교육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국·공립 특수교사 법정 정원수는 17,779명으로 실제 배정된 특수교사는 11,170명으로 62.8%의 특수교원 법정 정원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기준으로 2,856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사 법정 정원의 약 2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율 부족 현상은 학교뿐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해당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에 대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많

은 계약직 교원으로 인하여 빈번한 이동과 책무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관련 60시간 현직연수 이수율도 단지 31%에 불과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교육의 제공이 어렵다.

- 특수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

매년 특수교사의 1,000명 이상을 충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범주의 확대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담당교사 중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통합학급 설치 및 지원확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201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87,950명 중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61,989명 의수치를 보인다. 그 중에서 일반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자는 15,344명(17.4%)이고 특수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6,645명(53.0%)으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수가 3배 이상 많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정책이 특수학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완전통합교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특수학급 중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급과의 협력 작업의 어려움,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일반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 및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이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교 행정가 및 담임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교육적 지원이 미비하고 일반교실 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및 교재교구와 같은 물적 자원도 부족할뿐더러 일반학급 내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장애학생과 비장

에 학생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의 부족, 다양한 교수 방법의 부족 등의 문제는 통합교육의 질적인 성과를 보충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특수학급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합학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통합교육 환경의 토대 확충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담당교원과 보조인력 배치율을 100% 확보하고 일반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

-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 설치 의무화

현재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하여 2인 교사 시스템을 도입. 통합학급 내 교사들을 위한 통합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 유급 보조 인력을 확보,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의 환경을 마련

3.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증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대학생 수는 2008년엔 3,837명이었으나 2012년엔 7,608명으로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규정(제30조),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자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 제공 규정(제31조)을 두어 장애대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 부족, 장애대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 또는 보조기기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대학생의 휴학 및 자퇴 비율이 35%(2012년 기준)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4. 장애인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강화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기회 증가로 인해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중도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석·박사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교육 중 학사과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학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석사나 박사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는 장애로 인한 취업기회의 어려움 및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어려워 학비 뿐 아니라 생활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석·박사 이상의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석·박사 과정의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과 함께 생활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2016년에 3,411명으로 아직도 장애 대학생 수의 1/2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대학생활 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효율성 있는 운영 및 내실화가 요구된다.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학생의 법적의무화
-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100% 확보
- 장애인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확보
- 장애학생 도우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VI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1.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우리사회에서 탈시설·자립과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가 쟁점이 되는 것과 달리 실제 자립과 참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이 작성한 우리나라 CRPD 관련 우려 분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가 꼽히고 있다. 이 보고서의 37호에서는 장애인시설과 입소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정책 결여나 조치의 미흡이 언급된 바 있다.

2015년 거주시설 거주인의 상당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체 이용자 31,222명 중 28,218명으로 90%에 육박한다. 이는 대다수 시설 이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립을 꿈꾸거나 실제로 자립을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시설의 장애인학대, 폭행, 착취 등의 인권침해 사항은 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장기입원 장애인이나 집에 장기침거중인 장애인도 가정으로부터 방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지역사회로 안착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탈시설 자립정착금 제도화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 탈시설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 자립생활 주택 확대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거주시설 내 탈시설 지원 전담인력 배치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운영
- 탈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
-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주거(주거장소+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Ⅶ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1.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설장애인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에서도 거주시설이 아닌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견되었지만 조사의 근거와 처벌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정신장애인의 경우 강제 그리고 장기입원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지역사회지원체계의 미비로 사회적 입원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율은 86%로 선진국의 3~30%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 연간 입원 평균 일수 역시 233일로 오스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에 비해 매우

높아 인권보장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되고 전반적으로 의료법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원 후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법적 토대와 지원이 없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가 재입원을 반복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사회복지를 지원 하는 것이 시급하다.

- 퇴원 전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 강화

- 사회복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정서지원 포함)
- 장애인 당사자 코치 배치
- 사회복지 지원 수가 신설

- 사회복지 초기 지원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직장복귀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직업재활 강화
- 주거환경 개선지원(주거개조, 독립주택 지원)
-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지속적인 연계 필요
-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모델 및 전달체계 구축

VIII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현재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인은 화재·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지고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다.

국내의 재난대응 지침들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제작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과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져 실제 재난 발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어렵다. 또한 현재 재난 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와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모바일 포털 등 대국민 재난 알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대상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과 보급, 교육 지속화와 함께 전문 체험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마련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연구
 - 국민안전처 등 연계기관 간 협조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강사육성 교육
 - 재난 취약계층 유형 별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및 커리큘럼 교재 개발
 - 안전한 대피를 위해 유형별 재난 대비 및 대피 교육, 훈련
 - 재난안전관리, 교육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률 증대
-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행동매뉴얼 개발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전문체험관 건립 및 교육
- 매뉴얼 개발 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와 당사자 의견 수렴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재난 안전교육(3차 계획과 동일)
- 재난 취약계층 대치 기구 개발 및 보급
 - 장애유형별 재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제작
 - 재난 시 대피를 보조할 수 있는 장비 마련
 - 장애 유형별 대피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 안전체험관 운영
 -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 장애유형별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설립
- 국민안전처 내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IX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비장애인과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강은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제한시키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현재 장애인에게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심각한 건강격차를 유발함으로써 2차 장애발생이나 건강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건강 의료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2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지원 등 환경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 기피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부족으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57.3%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책임의 일환으로 건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인당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법은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서비스 제공의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차원과 목적에서 중시된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는 개인적인 요인보다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밀접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위해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보장구에 대한 지식전달 등을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제정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의무목록 작성 및 모니터링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건강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세부방안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의원급 70%, 병원급 90%, 종합병원급 100%)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설비 및 위생시설설비 및 장비 개발·보급
 - 중증장애인 500명당 장애인건강주치의 1명 비율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의료장비,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정보접근방안 시행
 - 장애특성을 고려한 국가건강검진제도 실시
 -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장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문인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실시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관 체육편의시설 완비
 - 장애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정보 시스템 제공 구축

2.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별표1)의 본인부담금제는 입원치료 및 만성 신부전 환자 등 보건복지장관이 지정한 요양급여수급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10/100이 본인 부담으로 부과된다. 2015년 기준, 신장장애인은 7만 4천여 명, 만성 신부전증환자는 2014년도 기준 159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연 평균 12.9% 증가하는 실정이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신장장애인)은 2006년 1월 이후 본인부담금 20%, 2009년 7월부터 10% 경감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을 투석비로 지출하고 있다. 주3회, 4시간 가량 혈액투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장장애인 및 만성신부전환자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서비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 척수장애인의 경우 현재 병원에서 시행중인 ‘포괄간호병동(보호자 없는 병동)’이 해당되지 않아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포괄간호병동제는 입원서비스 전반에 전문 간호인력이 전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면 가족의 경제적인 손실(월 200~300만원)을 막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조속한 퇴원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장장애인 및 만성신부전환자 본인부담을 경감
 - 의료비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을 10%에서 5% 경감 필요
 - 사회적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 척수장애 등 중도장애인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 포괄간호병동제 확대 적용
 - 장기입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
 - 자조집단 및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X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1. 근로연계 장애인소득 지원제도 도입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54만원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329만원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35만원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22.7%, 상용근로자의 10.7%에 불과하며, 2014년 기준 월 최저임금 1,088,890원의 32.2%에 불과하다.

장애인가구 월 평균 지출은 약 171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있어 특히 중증장애인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소득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체계 별도 마련 및 적용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장애인 근로소득 수준 등을 고려, 별도의 장애인 근로장려세제 지원기준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자립지원통장 제도 등) 개선

- 희망키움통장의 3년 만기 탈수급 조건 완화
- 매칭율(1:1) 조정 등 장애인의 근로 및 여건에 적합한 제도 개선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 장애인의 적정 근로소득 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급여 확대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료급여 자격기준 완화 및 필요 보조기기 지원 확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높은 생계비가 요구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고, 치료·요양·재활을 위해 절실한 의료급여자격도 상실되어 근로활동을 저해하거나 음성적인 근로활동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의 불균형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장애유형을 고려한 적절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중증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근로 및 사업소득에 50%~100% 공제를 적용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현재 안마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마사지 등 유사 불법 업종에 대한 제재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존권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2월부터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유사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정작 안마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우리사회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시각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4.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특례제도 도입

상당수의 장애인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은 수급가구가 2014년에 26.4%로 약 1/4에 지나지 않으며,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1/3이나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34.1%에 불과하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3.3%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이 장애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지급연령(일반인 67세, 중증장애인 65세)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조기 노령연금도 비장애인보다 1년 빠르게 수령하는 것을 허용(일반인 63세, 중증장애인 62세)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전 혹은 가입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아무리 기여하더라도 동일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만 가능한데다가 또한, 동 가입자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가 악화되더라도 동일 장애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반면, 장애연금 수급권자로서 장애가 악화 혹은 완화될 경우 장애등급이 조정되어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적연금 가입 전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실례도 있다.

– 장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 수급 개시 연령 하향 조정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특례제도 도입

- 선천성 장애 등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정도 이상의 가입기간을 달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특례를 적용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해당 장애의 악화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

XI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의 고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막상 취업이 되더라도 장애인의 근속기간은 매우 짧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률은 8.7개월로 취업 진입과 고용 유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6년도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노동상담센터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89.4%의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그냥 참거나 그만둔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 내 문제발생 시 비장애인의 경우 지방노동청 등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지만,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 기능 확대 및 기업 또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강화

- 직업재활 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관련 단체 등의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 강화(예: 지속적 상담, 문제해결, 사업체 인식개선, 여가지원 등)
- 고용 관련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인력 확대

-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근로지원을 위한 인력(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등) 필수 배치 및 확대
- 근로지원인 확대 및 처우 개선
- 전문자격증 소지 근로지원인에 대한 차등 처우

– 중증장애인 해고 보호 제도 도입

- 독일의 해고 보호 제도 등을 벤치마킹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심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지원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약 65%로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정부의 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일부 내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만은 아직 미적용 상태로 남아있다
- 외국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2014년 기준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10만7,531명(전체 임금노동자 1,215만 명의 17.3%)이고, 이중 장애인 근로자는 2만3,087명(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3.4%)으로 장애인근로자 7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XII 장애인 문화권 증진

1. 장애예술인 창작발표 전용 공간 및 창작지원

장애예술은 장애인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사유를 예술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예술은 동등한 문화예술 접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5년 11월 서울 대학로에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이음)가 만들어져 창작발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지체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향유 및 접근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 활동에 관심과 자질을 가진 장애인에게 예술 활동을 위한 상설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 장애인 전용 공연장, 창작센터 등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의 전국 거점화 및 지역 장애문화예술센터 마련
- 접근성 높은 지역에 대표 지역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인 예술 활동 공간 마련
- 장애인의 창작발표를 위해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의 장애인 전용극장으로 활용
-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의 장애인 대관 방안 마련
(장애인 공연단체 대관에 불이익 있는 요소 제거)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 및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예술에 있어 장애는 방해요인이 아닌 창작활동의 오브제로서 장애유형별 예술창작 작업은 장애예술가들만의 독특한 개성이 될 수 있으며, 한 장애인이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단계적, 맞춤형 예술교육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예술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예술활동 및 교육이 지체장애와 같은 특정장애 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양성기관 설립

- 장애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원의 확보와 양성과정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학교 내 프로 장애인 문화예술가 배치 및 후학 양성 활동 지원

XIII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최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장애인학대 사건들은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하여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충주 축사노예’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분석한 6년간의 장애인 학대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100건이었던 학대상담은 2013년 3,15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와 관련한 상황이나 특성으로 인해 학대를 쉽게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학대 피해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대는 피해 장애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출되지 못한 학대, 인지하지 못한 학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학대가 피해 장애인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심각성과 달리 그동안 장애인학대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고 그 결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장애인학대 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 마련 및 심리정서의료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 장애인학대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 장애인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학대 예방정책 : 학대 발생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감소 전략 제시
- 학대피해자를 위한 윈스탑 서비스 지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 실시 : 학대 이해 식별, 민감성 키우기
- 장애인 자기옹호 촉진 및 자기결정, 주도성 강화 목적의 교육, 훈련



제3차 NAP ‘외국인·이주민’ 분야에 대한 간단한 의견

오 경 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I ‘외국인·이주민’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위상

- 국민의 인권과 외국인의 인권은 정의 상관 관계에 있지 않음(아렌트가 지적한 “주권과 인권의 모순관계”)
-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 과제에 이주 인권은 물론이요 외국인 분야 자체가 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함(‘동포’와 ‘다문화가정’은 포함)
- 국민을 주체로 하는 주류 인권 담론과 정책 과제의 목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주민’ 분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상에서도 매우 특별하며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아야만 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조차도 ‘외국인·이주민’ 분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인권담론의 주류화속에서 오히려 ‘잊혀지는 존재’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근 반외국인 인권 및 반다문화주의 진영의 활동이 조직화되고 있는 양상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대표적임

II '외국인·이주민'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역할

- 반외국인인권 진영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진영으로부터도 확대 받고 있는 이주민 인권을 인권 정책의 철회불가능한 구성 요소로 승인하는 보편적 인권 원칙의 공표
- '외국인·이주민' 분야의 기존의 계획이나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을 인권의 지평에서 통합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
-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내용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
- 국내 이주 인권 환경의 변화와 동향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 규범이나 담론으로서의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계획 자체가 이주 인권의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제시

III 3차 NAP '외국인·이주민' 분야에 대한 간단한 평가

1. 실질적, 실제적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 제도적 접근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시행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법무부)의 경우 : 모두 이주인권 분야가 핵심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나, 핵심 과제 목록에 이주 인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이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5가지 주요 정책목표 중에 인권(차별 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했음. 총예산의 41.6%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개방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관광객, 해외 인적자본, 유학생, 외국인 투자 유치 등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외국인주민 전통문화 체험’,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 ‘외국인주민 대상 한복대여 사업’, ‘다문화 상설마당/행복 장터 운영’ 등 외국인 인권 정책의 범주로 분류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인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측됨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지속(법무부) :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총예산의 36.3%가 배정된 통합 분야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에 집중.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표1)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문제 영역	내용	개선 방안
이용자의 접근성	인터넷 접근의 불편함, 한국인 의존성, 개인정보 등 인권 침해	- 이용자 자신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운영상의 문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운영기관이 운영비 지원 없이 스스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들(상담, 언어 등), 그에 대한 정당한 지원 필요	- 상담, 언어 지원 등 부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취약한 인권친화성	- 교재: 교재의 ‘국민만들기(사통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 - 강사: 취약한 이주인권 감수성, 재교육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관리+처우 개선) - 운영: 교실의 비민주성(매시간 출결 서명날인, 장시간 수업 등) - 의사결정: 운영기관 및 수강생 등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통로 전무	- 사회통합의 재개념화(외국인과 국민사이의 상호적 과정)에 근거, 교재 수정 -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주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보수교육 정례화 - 교실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제고 - 법무부, 운영기관, 강사, 참여자 사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제도화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류체제 부재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그를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정례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인권 정책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포괄적인 접근

- 제3차 NAP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및 그 가족,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등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엇보임
- 인권 정책의 수요와 우선 순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주 인권 환경 및 동향의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3차 NAP는 그와 관련, 주요한 ‘현황’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증가’, ‘인신매매·성매매의 피해자가 된 외국여성’,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인종주의적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 증가’ 등을 제시함
-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추가적인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함(표2)

〈표 2〉 지난 5년간 이주 인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

환경의 변화	내용	정책 과제
체류의 장기화 및 정주형 장기체류자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율은전체의 74.7%인1,530,539명 -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재외동포 18.2%, 결혼이민 5.9%, 영주 6.4%로 정주형 장기체류자가 30%를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 지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 생활 세계 인권 의제들의 부상
가족 체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동반 금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팎에서 가족 체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장기체류외국인 가운데 가족가구 57%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의 14.5%는 배우자, 4.2%는 자녀 국내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정책 포용 - 가족 동반 불허 정책의 재고 - 외국인근로자 가족 자녀의 기본권
취업비자 이외의 취업이주민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취업자의 비중은 약 50%에 불과 - 영주(F-5) 비자 소지자의 고용률 73.5%, 재외동포(F-4) 59.2%, 결혼이민자 49.8%, 유학생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재검토 : 방문취업제 수준의 노동허가제로(가족 동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미등록 체류의 미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율은 감소했으나 규모는 그대로 : 2005년 27.3%에서 2016년 10.1%로 감소, 그러나 규모는 208,971명 - 전체 미등록자 가운데 단기체류외국인이 63.5%로 장기체류외국인 36.5%를 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자 중심의 미등록 단속 및 퇴거 정책 재고

3. 국제 인권 기구들의 권고 내용에 대한 개방적이며 전향적인 포용의 필요성

- 국제인권기구의 한국 이주민권 상황 개선 권고안의 키워드들에는 ‘인종차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 ‘다문화가족의 정의’ 등이 포함됨
- 제3차 NAP에는 ‘인종차별’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센터는 2016인종차별실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공공부문 내에서의 인종차별이 광범위하게 확인됨(표3). 그러나 인종차별금지법이 부재함으로 인종관련 범죄 기소 건수 0건으로, 한국은 공식적인 인종차별 청정 지역임. 최종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나 공공부문 내 인종차별금지 관련 내규의 마련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표 3〉 공공부문의 인종차별 사례

사례	내용
<p>나는 밥먹고 할 일 없어 주제 파악 못하고 가지가지 하는 외국인 국적 취득 희망자가 아닙니다</p>	<p>중국 출신 30대 여성 김모씨는 한국 귀화(국적 취득)시험을 치른 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자신감에 꼭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으로 불합격이었다. 결과에 낙담하고 있다가 문득 시험장에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험자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다. 혹시 하는 마음에 법무부에 결과를 확인하러 갔다.</p> <p>오전 9시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침착하게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던 담당자는 “당신같이 실력도 없고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친다” 라며 모욕적인 반응을 보였다.</p> <p>번거롭겠지만 꼭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했다. 담당자는 김모씨의 부탁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리고 안됐다는 듯 껄껄 혀를 차기도 했다.</p> <p>담당자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이 너무나 불편해 청와대의 신문고에 사정을 올린 후 신문고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곧바로 법무부 담당자는 불합격한 답안지를 가지고 나왔다. 그 땀 이미 오후 5시가 다 되</p>

사례	내용
	<p>어 있었다. 답안지를 확인시켜주면서도 담당자는 “참 가지가지 한다”면서 “밥 먹고 할 일이 없냐”고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p> <p>답안지를 확인해본 결과, 김모씨의 생각이 맞았다. 김모씨는 합격이었고,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험생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때서야 담당자는 컴퓨터 인식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만 얘기를 했다. 사과는 전혀 없었다.</p>
<p>나는 도망가려고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p>	<p>15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B씨는 남편과 동행하여 이중국적 취득 인터뷰를 받았다. 인터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B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p> <p>(심사자) “이중국적을 왜 취득하려고 하세요?” (결혼이주여성 B씨)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이에요. 엄마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심사자) “한국 국적 따면 도망가려고요?” (결혼이주여성 B씨) “네?”</p>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라든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의존성 역시 실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 시설이 존재하나, 입소 자격이 제한적이며 주무 부처 간 연계 부족으로 이주 여성 피해자의 접근성 및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짐(이용 대상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로 제한됨으로써, 미등록 이주여성은 원천적으로 입소가 불가능함. 10세 이상 남아의 경우 엄마랑 동반 입소가 불허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거주하더라도, 인터넷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표시되지 않음(자녀 학교 등에 등본 제출시 어머니가 미기재되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 자녀 여권 발급 등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관련 행정사항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초본에 별도 기재 가능하나,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야 기재 가능함)

IV 추가적인 과제

1. 정책 대상 우선 순위의 차별성 : 인권 사각 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기존의 외국인 정책과 인권 정책은 그 대상에서 차별성이 있어야만 함. 외국인 정책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은 '합법성'이 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인권 정책의 대상은 합법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으로 확장됨
- 그 경우, 우선 순위는 기존 정책에서 배제된 집단이나 개인이어야만 함 : 소위 '작은 권리'가 문제인 집단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박탈' 당한 외국인들. 미등록 체류자, 무국적자 및 무국적 아동, 외국인근로자 가족, 난민 신청자, 국적 미취득 비혼 상태의 싱글맘 이주여성, 장기구급자, 범죄피해자 등

2. 시민 사회 및 당사자 집단과의 보다 능동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환경 변화 및 인권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후적이며 형식적 조치를 넘어, 예방적이며 실질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및 시민사회와, 당사자 집단과의 보다 능동적이며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함

3. '외국인·이주민' 분야 인터페이스 종사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처우 개선

- 좁게는 법무부 출입국 분야, 넓게는 공공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이주민'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인권 교육이 정규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인권친화적인 업무 방식이 업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교육 내용이 실행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지위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함. 특히 난민 및 무국적자, 미등록 단속 업무 종사자 등, 업무 강도가 세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인사고과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담당자들이, 종사자이자 동시에 이주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위와 처우에서, 보다 능동적인 지지와 지원이 요청됨



| 제3부 | 사회권 분야

- **교육권**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권**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사회복지**
이상훈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교육권 분야 의견

오 동 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사회적인'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여 실질적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본적 인권이다. 헌법은 사회적 기본적 인권의 첫머리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배치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그 인격과 역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작용으로서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가치의 제고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교육의 헌법이념은 첫째, 개인의 개성 신장과 능력 계발에 기여하고, 둘째, 민주시민의 철학을 습득하고 자질을 길러주며, 셋째, 균등한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넷째, 교육은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 창조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첫째, 무한경쟁을 부추겨 개인을 몰개성화하고 능력 발휘 기회를 왜곡한다. 둘째, 민주시민이 아니라 순응하고 복종하는 신민화를 부추긴다. 셋째, 교육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지식 위주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 학교 밖 아동도 학교 안의 아동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제도와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과잉 학습노동, 배움의 왜곡, 과열 사교육, 계층 고착화, 공교육 파행을 벗어

나기 어렵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교육권의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II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확인

교육권의 인권적·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했던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기엔 법무부(2017)의 안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외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법무부, 2017: 2)으로 보기엔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인권 비전에 따른 계획이라기보다는 각 부처의 ‘칸막이’ 아래 개별 사업의 수합에 불과하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법무부, 2017: 3-5)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권 관련 몇 가지만 발췌한다. 첫째,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이다.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 정책의 연계 및 종합”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 정책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문화, 보건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향유 기회 제공, 향유 비용 저감 및 인권에 기초한 내실화 등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넷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이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내의 법적·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철폐하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III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의 중점 과제 예시

헌법 제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관점에서 교육권의 ‘기본적 인권’ 내용부터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아동 또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

가. 총론

(1)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어느 누구도 아동·청소년이 인권의 주체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인권 문제로 들어가면 ‘미성숙’을 이유로 너무 쉽게 인권 보장 내용을 부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목록을 예시하여 법률로써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자체가 헌법의 확인이자 인권교육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금지법 제정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한국 사회 인권 의식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 인권교육법 제정

인권을 성소수자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인권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좌초한 인권교육법 제정 또한 필수적이다.

나. 각론

(1) 체벌 금지: 초중등교육법 징계 조항 개정

전근대적인 비교육적 방법을 폐지 또는 혁신해야 한다. 체벌은 오랜 숙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사소한 정도일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수반하는 벌로서의 제재는 모두 체벌로 간주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중 밑줄 친 부분 삭제를 비롯하여 학생 징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 교육 과정 중 사건의 ‘잊힐 권리’: 초중등교육법 학생기록부 관련 조항 개정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관련 사항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아동 또는 학생의 정치적 권리 보장: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교육기본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민주시민 양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향후 16세로 낮추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권 보장의 생태계 개선

아동 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교육 정책 수립의 참여 보장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그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주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성에 따른 교육의 국가주의 배제 방안

헌법 제31조제4항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 정책은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정치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교과서 제도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민주시민교육 체계

교육기본법이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상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또는 시민 사회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 학교민주주의 체계

학생 자치와 교사 자치,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학부모의 공공적 참여, 지역 사회와 협력 등을 포함하는 학교민주주의 체계 구축은 교육생태계 관점에서는 물론 학교 공간에서의 교육권 보장을 교육주체들의 실천과 생활을 통해 이뤄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 사립학교 비리와 부정부패 방지책

한국의 교육체제에서 사립학교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교육권 보장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는 오래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상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교육권 관점에서 사학재단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화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과도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단위로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IV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과 제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과거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평가다. 진단과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반성이다. “제3차 NAP수립 이전에 과거의 1차 NAP와 2차 NAP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인권네트워크, 2017)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사회와 소통 부재다. 국가는 정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NGO 의견을 별도로 작성한다고 해도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 원리 등에 비춰볼 때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제일차적 책무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의 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대체되었고, 그나마도 시민사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인권 현실과 과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성찰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본계획에 담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인권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참고문헌〉

법무부(2017).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7. 10. 12.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국제인권네트워크 등(“인권네트워크”로 줄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7. 10. 1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편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I 근로의 권리 관련

1. 기본계획 주요내용

-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 나.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마련 (고용노동부)
- 다.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지원 (교육부)
- 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고용노동부)
- 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고용노동부)
- 아.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검토 (고용노동부)
- 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 차.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에 일할 권리 증진 (고용노동부)
- 카.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정기지도·감독 (고용노동부)
- 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 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 (고용노동부)
- 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너.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2. 노동시장 현황 :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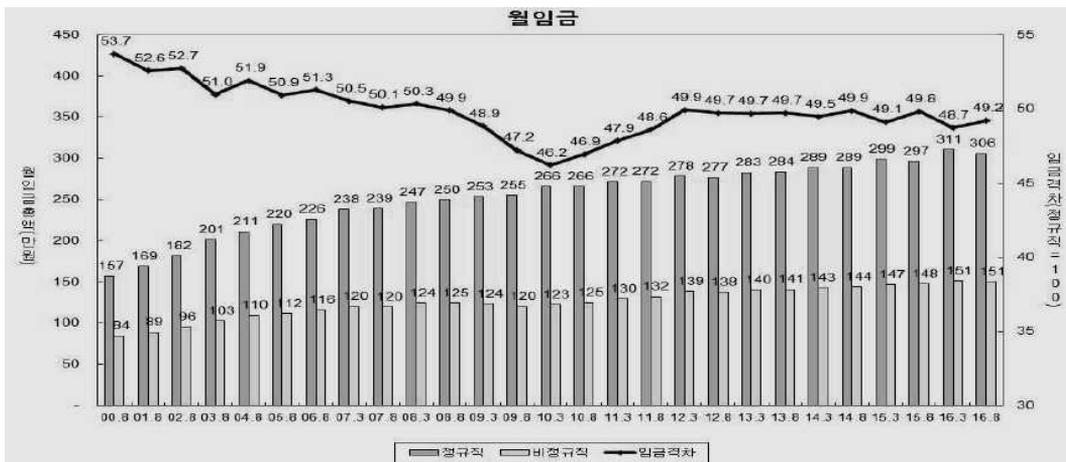
○ 비정규직 확산 ⇨ 여전함

- 통계청이 2007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1만명(임금 노동자의 54.2%), 정규직은 762만 명(45.8%)으로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
-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73만 명(44.5%), 정규직은 1,089만 명(55.5%)으로 집계됨
- 통계적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비율은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 유지
- 늘어난 정규직 중 상당수도 ① 저임금·임시직일 뿐만 아니라, ②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실상은 통계보다 더 심각함
-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기간제법·파견법이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차별 ⇨ 여전함, 오히려 격차 확대

- 2007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 평균임금은 50.5% 수준이었지만, 2016년 8월에는 49.2%로 오히려 격차가 확대됨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출처 : KLSI ISSUE PARER,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016. 11. 22.

-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정부는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차별시정 제도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차별이 시정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간(2014. 12. ~ 2015. 12.)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359건, 처리사건 중 시정조치는 43건에 불과
 -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시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실제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 특수고용노동자 ☞ 여전히 무대책
 -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국가인권위 권고, 국회에서 법안 제출이 되었으나,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
 - 토론이 있는 오늘도 대리, 택배기사들이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노동자 단식노숙농성 기자회견]



3. 총론

- 앞서 본 것처럼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함
- 비정규직은 확산되었고, 차별은 심화되었음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지겨울 정도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음
- 제1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에서 실제로 이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의문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수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위상과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
- ‘근로자’인지, 노동자‘인지 분명히 해주기 바람
 - 고용노동부는 왜 고용근로부가 아닌지,
 -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필요

4.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관련 의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에 적극 찬성함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기대
-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방안은 실효성 의문임
 - 현재 근로감독관 수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 또는 공상임
 - 근로감독관 수의 확충, 업무량 경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함

- 현재처럼 '개별 근로자'에게만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이상, 차별시정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가뜩이나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시정을 신청하라는 것은 사표를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
 - 차별시정 신청권·진정신청 권한을 노동조합(산별, 총연합단체 포함)에게 부여해야 함
- 기간제 및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역시 의문임
- 이 역시 거짓말 또는 공상임
 - 근로감독관 수의 확충, 업무량 경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함
- 기간제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자 전제
- 기간제 사유제한 : 정규직, 상시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함
 - 정규직 전환범위 확대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기간제 남용을 방지해야 함
 - 이러한 근본적 처방이 없이 사후적인 지원 대책만으로는 역부족,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음
-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의 확대
- 현재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만 차별시정 신청 가능, 차별시정 제도는 유명무실화
 - 해당 근로자,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 총연합단체에게 신청권 부여 필요

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마련 관련 의견

○ 특수고용노동자 정의

-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독립사업자의 외양을 띠도록 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일을 시키는 방식
- 학습지교사, 건설기계노동자,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A/S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거의 전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확산 배경 : 고용의 외부화 = 이윤의 사유화 + 책임의 사회화

- 특수고용노동자 확산은 고도화되는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근무방식이 다양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음, ex) 각국에서 확산되는 우버 택시기사
-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고용을 외부화함으로써 노동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임

○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와 실태

- 국가인권위가 2015년 발주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2,296,775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01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25,684,174명 중 8.9%가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
-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8.9%에 달하는 229만 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 ①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해고는 자유롭게, 퇴직금도 없고, 저임금은 당연하고),
 - ② 노동조합법 적용도 받지 못하며(노동3권 부인),
 - ③ 산재보험법도 부분 적용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임(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운전서비스 종사자 등의 경우 상시적 산재위험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입법 경과

- 1999년 이래 2017년 현재까지 약 20여 년에 걸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결성. 이후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레미콘 운송기사, 화물운송기사, 간병사, 덤프트럭 운송기사, 킥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조합 조직
- 2000년 이후 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안 마련, 입법청원
- 2000년 10월 정부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이후 계속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 유지
-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구성
- 2005년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공익위원 의견 정부에 이송. 공익위원안 '유사근로자 단결권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① 특정 사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②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노무 제공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등을 '유사근로자'로 하고, 노동2권(쟁의권 제외)과 몇 가지 개별법적·사회보장법적 보호 부여하는 방안
- 2006년 10월 25일 정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와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함.
- 2007년 6월 5일 4차례의 기초안 협의에 의해 정부안 확정, 발의. '특고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 그 중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한정'
- 2007년 6월 14일(17대 국회)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계약해지의 제한, 연차휴가, 보수지급의 원칙 등 개별적 보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결성 및 사업주와 협의권만 인정.
-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 전혀 실효성 없음. 2013년 학습지교사와 레미콘기사와 관련하여 6개의 업체에 시정명령을 한 사건의 결정문 외에는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이들 사건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내려진 주문은 장차 문제가 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지 말며 계약서를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법적 해결은 근로자성을 배척하는 전제에서 현행법 하에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충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 도입.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2008년 11월 11일(18대 국회)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의 당론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를 조직하고 교섭할 권한 인정, 교섭 결렬시 조정 및 중재를 거처도록 하고 집단행동 금지.
18대 국회에서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안(노동계 의견 반영)
- 2009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규약 시정명령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2011~12년 집중적 토론을 통해 특수고용 공동의 우선 요구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의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동등 적용 요구 마련.
- 민주노총 2012년 노조법 2조 개정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비정규직 없는 일타사회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 전개.
- 19대 국회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산재보험법 제5조 개정안 발의
- 2012년 9월 5일(19대 국회)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노조법 개정안.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 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소위원장 김성태 의원과 간사 이완영 의원이 실업자, 구직자, 특수형태 세 가지 중에서 특고노동자의 근로자 개념 확대는 절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 실패.
- 2016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례 적용 범위에서 특고 업종 3개 추가. 기존 '보험모집인, 레미콘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직종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
- 20대 국회 입법발의안
산재법 개정안: 특고 관련 특례 조항에서 적용제외 신청 조항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 등
노조법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정의 조항의 개정
2017년 2월 6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노조법 개정안. 노조법 제2조 제1호 단서 신설

- 현재도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안은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있음, 문제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입법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것임
- 발상의 전환 : 지금 당장 행정권 발동 가능
 - 차제에 발상을 전환하여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국회의 법안 통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행정권 발동이 필요함
 - 행정해석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 최소한이나마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규제할 필요 있음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길을 찾지 않고 지난 20년간 지리한 논쟁만 하는 국회에 또다시 짐을 넘기는 것은 역시 지난 20년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임

가칭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1. 기본 원칙과 방향

- 헌법 제33조 노동3권 보장
-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보장
-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주의 갑질,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 노동조합법 적용기준과 범위

- 근로자 개념요소 : ① 타인을 위해 노무제공, ②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
 - 도급, 위탁 등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헌법 제33조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폭넓게 근로자성 인정
- 직종별 예시 :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지입 차주(소유) 겸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배달앱 기사, . . . (상략) . . .

3.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 보장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완전한 노동3권 보장
 -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
- (단결권 보장) : 노조설립 신고시 형식적 요건 충족하면 즉시 설립필증 교부
 - 노조설립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던 기존 노동행정 관행 근절
- (단체교섭권 보장) :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
 -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사용자가 정한 업무기준 및 기타 개별계약에 우선
 -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감독
- (단체행동권 보장) :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권 보장
- (부당노동행위 근절) :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여 근절
 - 계약해지, 대리점 폐쇄, 노무제공 대가 지급 거절 등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사례에 관한 안내서 배포

4.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장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 사용자가 동법 제125조 제4항을 이유로 산재보험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도와 사후감독 철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본인 의사 확인
- (보험사업 비용 지원)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 규모 예시
 - 보험사업 비용지원 신청 방법
- (둘 이상의 사업) 특수고용노동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지도 및 감독
 - 보험료 납부비율은 각 사업별 노무제공 시간, 노무소득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지도

5. 불공정계약 근절

-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각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권장
 -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 금지
 - 일방적 해지권 등 갑의 횡포 방지
-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반기별로 각 직종별로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6. 특수고용노동자 전담부서

- 고용노동부 산하에 특수고용노동자 전담부서(상담센터 포함) 설치
- 전담부서는 반기별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 및 근무실태, 상담 접수 건수 및 조치내역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지원 관련 의견

- 고졸취업 인턴, 현장실습생의 근로실태
 - 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인 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망, 부친과 나눈 문자에서 “나 콜(call) 수 못 채웠어”라고 푸념을 호소함
 - 현장실습이란 이름 아래 매년 반복되는 노동 착취를 우리 모두가 방조한 사회적 타살
 - 감사원도 2015년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학생 중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실습했고, 현장실습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 기본계획은 취업지원만 있고, 실습생 보호대책은 없음
 - 명색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임

- 취업지원이라는 타이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생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7. 외국인근로자 관련 의견

-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관련 검토 필요
- 외국인 강제추방제도의 인권 침해 가능성 관련 원점부터 재점검 필요
- 법무부 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업, 어업) 도입 관련 검토 필요
 - 법률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시행, 3개월 단기 C-4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억제
 - 이른바 비닐하우스 기숙사, 휴일, 휴게시간 미적용 ⇨ 심각한 인권침해, 불법체류 유발

II 근로3권 관련

1. 기본계획 주요내용

-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 다.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2. 총평

- 처음 토론을 의뢰받았을 때 실수로 페이지가 누락된 줄 알았음
 -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원문 그대로 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매우 유감임

- 2017년 대한민국 노동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헌법상 노동3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임

3. 원점부터, 새로 다시 작성되어야 함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한국 정부에 무더기 권고했음
 - 지난 10월 9일 발표된 최종 권고문을 보면,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
 - 특히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제한 등을 우려하여 ILO의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 협약) 및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강조했다
 - 위원회는 또한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했음
 - 형사처벌(업무방해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무더기 권고를 받은 나라가 어디인지, 그 나라가 작성한 노동3권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지 정말 의문임
-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현재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함
 - 사실상 계획된 것이 없으니 폐기할 것도 없음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고려하고, 시민사회, 노동계와 논의를 거쳐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함

4. 최소한 답아야 할 내용

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 최소한 국제노동기주(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구체적인 비준계획 수립과 실제 비준 완료

나. 노동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 보장(노동조합법 개정)
- 간접고용노동자 단결권 보장(노동조합법 개정)
-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공무원노조법 개정)
- 해고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
- 법률 근거 없는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다.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철회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대리운전노조, 택배노조(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라. 산별교섭 활성화 등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박탈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자율교섭 보장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부문 노정교섭 보장, 산별교섭 의무화

- 산별협약 등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 조례나 지침에 의한 단체협약 개악 금지
-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마.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 단순 노무제공 거부 형식의 소극적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방향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합리적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 재검토)

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 현재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원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성 강화방안 수립
- 노동부 본부 내 특별근로감독기관 신설, 각 지방청 산하 광역근로감독부서 신설, 노동부내 법무실 강화(수사지원, 법적 대응) 방안 검토



NAP 안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의견

이 상 훈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I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회권 접근방향

현대국가는 자유권과 정치권의 확장으로 민주 국가가, 다시 사회권이 확대되어 복지국가가 탄생하였기에 사회권과 사회복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권은 개인의 나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빈부격차, 실업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고, 이는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상징되는 최근의 시대변화를 감안할 때 더욱 중요성을 더해간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정책 또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공공 안전망을 탄탄하게 갖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8. 10.)〉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상대빈곤율) '15년 13.8% ⇒ '16년 14.7%, (노인빈곤율) '06. 43.6% ⇒ '16. 47.7%(통계청)

* ('16년 월평균소득) 1분위 145만원, 전년대비 5.6%↓ vs 5분위 835만원, 2.1%↑(통계청)

* (지니계수) '15년 0.295 → '16년 0.304, (소득 5분위배율) '15년 5.11 → '16년 5.45(통계청)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기여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되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기여 공적부조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는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후자는 국민기초생활보험법을 중심으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사회보장최저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요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발표하였다¹⁾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존엄에 합당한 생활 수준과 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할 정도인지, 그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태조사에서 욕구 순위가 높은 소득, 주거,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5개년계획(7. 19.)에서도 복지 분야에서의 사회권 관련 정책을 여러 개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복지인권 정책들이 많이 발표하였는데, 새 정부의 임기와 함께 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번 인권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정책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NAP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보인다.

II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험법의 부양의무자 제도

(1) 경과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1) 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2017. 1. 24.), 이주영 발제문, 대한변협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하였다[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그럼에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① 생활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② 수급권자 스스로는 생활능력이 없으나 고소득 부양의무자를 둔 경우까지 국가가 부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가족관계가 해태 또는 단절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제를 들이대면서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폐지 요구가 계속 되었다.

(2) NAP 분석

201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약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NAP 초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해서는 2차 계획이행성과로서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개별 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고, 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적용대상의 선정·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을 뿐,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반영필요성

부양의무자 제도는 90여만명의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여부와 관련 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으면서 급속히 변화 움직임이 있음에도 NAP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도 19대 국회 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발의된 상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제19대 국회~현재)²⁾

의안	대표 발의의원	주요내용
2012. 6. 5.발의	이낙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부양능력 판정 기준 및 보장비용징수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2012.8.13.발의	남인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수급권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신청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부양능력 판정 및 보장비용 징수기준 위임근거 마련
2012.8.31.발의	강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비용징수조항 삭제)
2012.9.27.발의	서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가구가 장애인으로 구성되고 이주 한 명이상이 장애등급 3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

의안	대표 발의의원	주요내용
2012.10.30.발의	김용익	○ 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2012.12.3.발의	유재중	○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
2013.4.10.발의	김미희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14.3.28.발의	안철수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5년이상 거주한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2014.3.28.발의	김용익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2016.8.26.발의	전혜숙	○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재산 등 정보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비용징수 조항 삭제
2017.2.24.발의	윤소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17.3.3.발의	함진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는 제외하되 후징수하는 방안
2017.3.22.발의	남인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는 제외하되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 ○ 보장비용의 징수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배진수, 사회보장법연구.

따라서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는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권 문제이므로 우선 이에 대한 개/폐지도 NAP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거권

(1) 경과

우리나라는 교육이나 주거 영역에서의 사회보장이 특히 미흡해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과 그 지출에 있어서의 격차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주거정책이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함에도 주택의 소수 소유자에의 집중현상에 따라 오히려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주거빈곤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서민 주거안정이 정치권의 의제로 부상하면서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되었다. 현재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은 주택의 공급에 대한 측면과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이라는 사회보장사항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주택의 공급 측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법’을 통한 임차비 지원등이 주된 내용이고,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등이 주된 법률이다.

(2) NAP 분석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서,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종 국제규범에서도 주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5년에 제정·시행된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법률에서 명시하였다. 따라서 주거

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면 NAP 초안을 보면 우선 인권위 권고와 달리 주거권을 독립된 항목이 아닌 포괄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한 요소로만 구성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중심의 주택의 공급 측면은 여러 계획들이 적절한 수립되었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이라는 사회보장사항 측면은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3) 반영

우선 주거권의 중요성, 종전과 달리 주거권도 법적 권리로 명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항목으로 체계적인 인권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 측면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취약계층의 경우는 단순한 주택의 공급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보조 등 각종 주거 지원서비스가 결합될 필요가 있어서 최근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이외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권 측면에서 주거권의 방향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1)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크게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보장을 담보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NAP 안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주요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안들³⁾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는데, 국민연금 이사장 부재 등 4

3) <복지부의 2017년 업무보고내용 中>

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추가 단위 계획들이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2) 근로 유인을 통한 자활사업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은 빈곤층에 대한 일방적인 공적부조보다는 근로와 연결시켜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무리하게 평가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기초생활 수급제도와 별도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각종 자활사업들도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건강·보건 및 환경권에 대한 의견

1. 건강권

(1) 경과

건강권은 공해·산업재해 등 환경적 위협에 대하여 ‘건강할 권리’와, 의료시설 등 의료자원·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로 구분된다.

(2) NAP 분석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난 8월 9일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현재 63%인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권 중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로써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NAP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탈핵 내지 에너지전환 정책

‘건강할 권리’와 관련하여 최근 원전이라는 환경적 위협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24일 정부는 탈(脫)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NAP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공공후견

(1) 경과

공공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탓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후견인은 병원에서의 입·퇴원 결정 등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과 재산 관리, 기타 지역사회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주로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 등에 고립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2) NAP 분석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를 도와 주는 제도로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아예 후견청이라는 독립된 행정부서까지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정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올해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될 때도 정신요양원 입소자 중 가족이 없는 500여 명에 대해서 공공후견인을 선정해 주기도 하는 등 점차 활용방안을 넓히고 있다.

반면 NAP 초안을 보면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항목은 있지만, 공공후견제도는 언급이 되지 않고, 기타 달리 공후견제도가 발견되지 않는다.

(3) 반영

공공후견제도가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독립된 항목을 갖추어 별도의 인권 정책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 decorative circular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divided into segments with various icons: a document, a target, a computer monitor with a graph, a speech bubble, a megaphone, and a globe.

| 제4부 | 기업인권, 여성, 아동 분야

- **기업과 인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여성의 권리**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 **아동의 권리**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법학박사)



기업과 인권 분야

이 성 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I NAP 대한 일반적 평가

- 1) 제3차 인권 NAP (2017/8-2021)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시기적으로 일치, 따라서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2) 제3차 인권 NAP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인권 분야 과제를 체계화하고 인권기반접근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3) 이를 위해서는 지난 5년간 특히 최근의 국내외 인권 정책 국내외 환경 변화를 SWOT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참조)
- 4) 특히 인권 NAP가 의제의 Agenda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Plan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and Time-bound- 원칙에 준거하고 예산과 인권지표 개발과 시행이 수반되어야 함.

기업과 인권 SWOT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개선 의지와 정책 시도 ✓ 법무부의 인권개혁 의지 (문민화와 인권정책국 인권전문성 강화) ✓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노력과 성과 축적 (연구조사, 체크리스트 등) ✓ 일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 국내 인권단체의 노력 (예: KTNC Watch, 기업과 인권 광화문 포럼, 국제 기업과 인권 연수 등) ✓ 사회적연대경제, 공유경제, 지역화폐, 등 다양한 대안적 정책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일반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일부 정부부처, 경제 분야 - 의 소극적 이해와 대처 ✓ 인권 일반과 인권경영에 대한 일부 언론과 기업의 부정적 또는 왜곡된 인식과 이해 및 행동 ✓ 낮은 노조조직률과 노조의 기업과 인권 / 인권경영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 ✓ 기업과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및 연구기관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역량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방문 보고서와 권고안 발표 (2017년 5월)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7호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 유엔 사회권 위원회 기업과 인권 분야 국가의 의무 일반 논평 24호 발표 (2017년 6월) ✓ 독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 (2017년 7월)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4차 심의 권고안 (2017년 10월) ✓ 유엔 3차 UPR (2017년 11월) ✓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 (AICHR) 기업과 인권 의제 채택 및 실행 노력 ✓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 제정 노력 ——— 국내 ——— ✓ 문재인 정부의 인권개선 ✓ 정책 헌법 개정 ✓ 노사정 위원회 '정상화' 시도 ✓ 국회의 기업과 인권 관련 법안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항목 포함 ✓ 일부 기업의 인권경영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상황 ✓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의 지속적인 반인권, 반노동 관행과 문화 ✓ 일부 강대국의 기업과 인권 원칙에 반하는 정책

II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한 평가

- 1) 기업과 인권의 경우 지난 5년간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 임. 국내외적 환경은 매우 우호적임, 예,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기업, 노동과 인권 정책 기조 또한 우호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기업과 인권 국내외 규범과 제도 및 정책 표 참조)
- 2) 기업과 인권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 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이 중요해 지는 복합적 인권맥락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
- 3)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노력에 기반하여 이를 모든 공기업에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기업의 요구)
- 4) 제2차 인권 NAP 에는 ‘기업인권’이라는 별도의 장 없이 미약하지만 ‘경영활동에서 인권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기업인권교육/ NCP 운영개선’ 등 과제가 개별적으로 있었음.
- 5) 제3차 인권 NAP 초안에 따르면 기업과 인권은 제6부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의 제 II. 기업과 인권(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4개의 과제가 제시됨.

제3차 인권 NAP 초안 – 기업과 인권 분야 과제

분야	구체적 실천 과제
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 (외교부·산업부·고용부)	1) 기업의 인권 이행을 위해 기업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를 표명 - 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 표명 (선언) 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의 인권에 대한 홍보 추진

분야	구체적 실천 과제
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1) 「조달사업법」상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 신설에 따른 제도 정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침의 적극 적용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기업과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 2)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참여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평가
다.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1) OECD 동료평가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오랜 운영경험 벤치마킹 2)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라.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1)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아래 표는 3차 기업과 인권 NAP에서 준수 및 고려해야 하는 국내외 규범과 제도 및 정책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기업과 인권 분야 매트릭스 - 국내외 규범과 제도 및 정책

	국제	국내 (한국 관련)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2)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국제규약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201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노동기준 •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3자 선언 (2017년 3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 및 권고안 (2017년 5월) •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 한국정부 권고안 (2017년 10월)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NAP 제정권고안 (2016년 5월)

	국제	국내 (한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기구(ISO) 26000 •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 •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 유엔 글로벌 컴팩 10대 원칙 • EU 비재무보고명령 (Directive) (2014년) •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2015년 9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NCP)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2011)
제도 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선언문 (2017년 7월)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2년-) • 유엔 기업과 인권 글로벌 포럼 (제네바, 2012년-) •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과 인권 국제조약 제정을 위한 유엔 실무그룹 (OEIGWG) (2015년-) • OECD 기업책임경영 글로벌 포럼 (파리, 6월, 2013년-) • 유엔 글로벌 컴팩 (UNGC)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년 12월)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로드맵 연구 (2016년)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연구 (2017년) • 유엔 글로벌 컴팩 (UNGC) 한국협회

III 평가와 제언

1. 기업과 인권 분야 NAP 초안은 제2기 인권 NAP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과 인권 분야가 크게 보완되었지만 현재 당면한 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형식과 내용 모두 매우 취약함.
2. 초안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권고, 인권위의 권고와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에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음.
3. 사회권 규약 위원회 권고 (2017년 10월)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권고안 (2017년 5월) 등 최신 동향과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함.
4.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NAP에서 포함되어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음.
 - 1) 먼저, 기업과 인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객관적인 국제 인권규범이기에 국가의 이행의무이자 기업의 경우도 책무성의 내용에 속함.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을 등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NAP에서는 ‘사회적 책임’ 대신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무)성’이란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2) 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의 경우, 내용과 수준이 너무 미약함. 기업과 인권은 홍보를 넘어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공표해야 함. 경총 등 경영자 단체와 노조와 함께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과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3) 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4) 다. OECD NCP 개선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 NCP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지정한 2011년 인권위의 구체적 권고안을 토대로 개혁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함. 노동조합과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
- 5) 라.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의 경우, 국제적 의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하기 전에 국내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 인권위 포함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 함.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의 논의 활성화해야 함. 다자기구에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
- 6) 국내 기업과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고려할 때 기업 (공기업과 민간기업) 대상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인권경영 실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함 (국가인권위와 긴밀한 협력 필요함)
- 7) 인권 NAP의 다른 분야 (사회권, 소수자 분야 등) 개별 과제에 관련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업과 인권의 주류화 관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8) 정부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을 이행하기 위한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지원 계획 포함) 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 이 계획에는 인권경영의 제도화, 구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제도화가 중요함. 이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함.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인권경영의 제도화는 반드시 이번에 성취해야 할 시급한 과제
 - 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KOIC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과 인권의 관점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참고 자료 참조)
 - 노동권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핵심노동기준 비준과 실행을 인권경영으로 연계 및 확대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 위원회에 기업과 인권 / 인권경영을 의제화하여 참여

- 국내 기업과 인권 이행을 위한 다자간 포럼 (정부, 기업, 노조, 투자,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연구자 등) 구성하여 소통과 협력이 플랫폼 구축
- 9)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노력에 발 맞추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제정이 요구됨 / 인권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 10) 실행 주체화 SDGs 이행에서 기업과 인권의 중요성 강조 - SDGs 이행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발전)의제 A/RES/70/1
 67항. 민간기업 활동과 투자·혁신은 생산성, 포용적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주요한 동력이다. 우리는 영세기업부터 협동조합·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창의성과 혁신을 지속가능개발 과제의 해결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기업 부문을 조성하는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P BHR)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아동권리협약(CRC) 및 주요 다자 환경 협정과 같은 관련 국제 기준·협정 및 이에 관한 기타 진행 중인 구상에 따라 당사국들의 노동권과 환경·보건 기준을 보호할 것이다.

- 6. 위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유권 (2부) 또는 사회권 (3부) 처럼 목차에 독자적인 부로 구성하여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7.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제정. 구성 인권 일반 NAP와 내용과 형식적으로 연계되면서도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를 채택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시급한 과제는 인권 일반 NAP에 포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준비해서 기업과 인권 NAP (2018-2021) 를 만들 것을 제안함)

그 주된 이유는

- 가) 기업의 책무성과 비사법 구제를 강조하는 기업과 인권의 특성 - 국가의 의무 중심인 일반 NAP와 다른 접근이 필요함.
- 나) 기업과 인권 특히 인권경영 도입의 시급성 -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 뇌물 사건 연루, 갑질 사건 등에서 드러난 기업의 인권침해 관여 및 연루 행태를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함.

- 다) 국제적 추세와 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 유럽과 미국 등 OECD 대다수 국가가 기업과 인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AP를 채택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20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 중. 그리고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 제정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라)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의 책무성과 기여 측면에서 NAP의 과제를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IV 주요 참고 자료

-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제네바, 2017년 10월)
- 2) 유엔 사회권 위원회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의 인권의무에 대한 일반 논평 24호 - 목차 (2017년 5월)
- 3) 유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2017년 5월)
- 4) 2017년 G20정상회의 최종성명서 (독일 함부르크, 2017년 7월) - 기업과 인권 (공급망 관련)
- 5)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안 - 9대 과제 (2016년 9월)
- 6)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3년)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E/C.12/KOR/CO/4)

para.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4차 및 제55차 회의 (E/C.12/ 2017/SR.54 및 55)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 (E/C.12/KOR/4)를 검토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기업과 인권

para. 17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용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para. 18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거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b)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용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 (d)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para.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중략>

- para. 71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안에 담긴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달성은 당사국이 진전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유자로 대우함으로써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 참여 및 책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목표를 실행한다면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 para.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달성한 진전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 지표(HRI/MC/2008/ 3 참조) 에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 틀을 제시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사회권) 위원회

기업활동의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

요약

I. 도입 (1-2)

- 1)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특히, 고용 기회 창출과 사적 투자를 통해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가 해당 사법권 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활동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왔다. 본 일반논평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기업 활동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약의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 2) 위원회는 건강, 주거, 음식, 물, 사회보장, 근로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관련된 특정한 규약상의 권리의 향유에 있어 증가하는 기업 활동의 영향에 대해 고려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고 개별적 소통에 대한 첫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이슈들을 해결해왔다. 2011년, 위원회는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국가 의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본 일반논평은 이와 같이 일반논평의 발표 이전에 채택된 의견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또는 유럽평의회등의 지역기구 내에서의 진보도 고려하였다. 본 일반논평의 채택에 있어, 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승인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뿐 아니라 해당 이슈에 대한 인권조약기구의 기여와 다양한 특별절차를 감안하였다.

II. 맥락 및 범위

III.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 A. 차별금지 의무
- B. 권리의 존중, 보호, 충족의무
 - 존중의 의무
 - 보호의 의무
 - 충족의 의무 (Fulfill)
- C. 역외 의무 (ETO)
 - 존중의 역외 의무

IV. 구제제도

- A. 일반원칙
- B. 구제제도의 유형
 - 사법적 구제제도
 - 비사법적 구제제도

V. 이행 (58-59)

59)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도입에 이어 많은 국가 또는 지역단체들이 기업과 인권 NAP를 도입했다. 이는 특히, 이러한 NAP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할당하며, 채택을 위한 시간 프레임워크와 필요한 수단에 대해 정의한다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차별 금지 및 양성 평등, 책임성 및 투명성을 포함하는 인권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NAP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은 모니터링 해야하며, NAP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 범주를 동등하게 강조해야 한다. 그러한 NAP의 설계에 대한 참여요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국가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규약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는데 있어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3.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A/HRC/35/32/Add.1 2017년 5월 1일

XI. 결론 및 권고

A. 총평

- 1) 실무그룹은 이행원칙과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 실무그룹은 행동을 약속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활동 및 기업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무그룹은 일터에서의 안전, 공급망 관리, 기업문화와 여성에 대한 영향, 국외에서의 기업활동,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등 광범한 도전과제들을 확인하였다.
- 2)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개시하고 완전한 다자이해관계자 대화를 장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역내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 모범관행을 기초로 정책 개발 및 입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B. 정부에 대한 권고

- 1) 다자이해관계자 참여와 실무그룹의 지침에 의거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라.
- 2) 이행원칙에 따라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처리할 정부의 의무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에 관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라.
- 3)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

- 4)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lead companies)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
- 5) 기업의 해외 활동과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라.
- 6) 관련 정책에 있어서 기업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기업의 국내외 활동과 관련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라.
- 7) 기업과 인권 사안에 대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열린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라.
- 8) 공공조달 정책 및 계약에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더 확실하게 포함하라.
- 9) 국내 및 국외에서의 활동과 관련, 이행원칙과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는 공기업의 모범사례를 강조하라.
- 10)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세이프가드와 관련, 시민사회와 협의하도록 장려하라.
- 11) 구제 접근성을 점검하여 기업 관련 인권피해를 다루는 사법적/비사법적 제도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 12)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법적 자문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1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
- 14) 대한민국에 설립된 기업 관련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과 판사들의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라.
- 1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른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라.
- 16)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독립성과 가시성을 증진하고 인적/재정적 자원을 강화하라. 국내연락사무소의 권한을 더 명확히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확대하라.

- 17)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며, 필요시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라.
- 18) 울산에 산업재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라.
- 1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차별 사안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의한 모든 인권피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라.

C. 기업에 대한 권고

- 20) (정책 및 현장/운영 단계를 포함하여) 전 단위에서 기업의 가치망 전체와 해외 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 이행원칙을 인지하고 이행하도록 하라.
- 21)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며 이를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라.
- 22) 부정적 인권영향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피해자 모두와 유의미한 협의를 추진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라.
- 23) 일터에서의 양성 불평등을 시정하고, 인권 위협이 여성, 아동,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라.
- 24) 이주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이 당면한 인권 위협문제를 해결하라.
- 25)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행원칙 31의 효과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차원의 고충처리 제도를 개발 및 운영하라.
- 2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라.
- 2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기업협회에 참여하여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이행 경험을 학습하라.

- 28)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위협과 부정적 관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구하라.
- 29)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 30)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일터에서의 안전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시정하라.

D. 시민사회에 대한 권고

- 31)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행원칙에 따라 국가와 기업에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
- 32) 피해자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문제를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라.
- 33)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자이해관계자 과정에 참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라.

4. 2017년 G20정상회의 최종성명서

지속가능한 국제공급망(Sustainable Global Supply Chains)

국제공급망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전은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틀에 따라 노동, 사회, 환경 기준들 및 인권의 이행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들은 OECD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며,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닌 국가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환영 한다.

우리는 국내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NAP) 수립과 같은 적절한 정책 기본 틀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기업들이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due diligence)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동노동을 2025년까지 근절하고,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모든 종류의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산재사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전-제로기금을 환영하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대화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공급망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구제에 대한 접근과, 적용 가능한 경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와 같은 비사법적 고충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우리는 다국적기업들이 적절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 틀을 체결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계속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면서, 미소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자금조달, 기술, 훈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증진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안 (2016년 9월) – 9개 핵심 분야

-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 2) 기업과 인권 정책 일반
- 3)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 4)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 5) 분쟁지역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활동 지원
- 6)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 7)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활동

- 8)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의 제고
- 9)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및 실효성 제고

6.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년)

<결론부분 발췌>

(1)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과 제도

해외한국기업의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1) 국내적인 절차로는 형사, 민사적인 사법절차, NCP와 같은 비사법적 국가 기반 절차가 있고 2) 국제적인 절차로는 조약에 기초한 인권메커니즘이나 현장에 기초한 인권메커니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로는 앞에서 살펴본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법절차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법원에 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비사법적 국가기반 절차인 NCP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NCP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제절차로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또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개선이 가능한 추가적인 예방 내지 구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에서 노동법이나 환경법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 전반적인 현지 법령들에 대한 국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2) NCP가 자신의 임무 중 하나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재외 공관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3) KOTRA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대규모 강제 이주 혹은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자원의교를 표방하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지 정부를 로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이 방문한 재외 공관 중에는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감독하는 것을 전혀 자신들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 규정 제9조의 8 제1항을 보면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재외 공관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최소한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6) 현재 수출입은행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 관한 기본정보, 투자 환경 정보, 국가 신용도에 관한 정보, 투자환경위험평가, 환경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인권 위협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10은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위험이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 가장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고 각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고, 투자지원과 연동시켜야 한다.

(2)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인 법과 제도

지금까지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거의 무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 공적기금의 인권에 기반 한 투자지침 마련(연금법 개정)
- 2) 강제노동 등에 대한 실사(상당주의의무이행)여부 공시의무 부과
- 3) 공기업의 투자, 운영 단계에서 인권을 반영한 경영평가 및 공시규정 마련
- 4)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
- 5)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규제 강화
- 6) 분쟁지역, 특히 분쟁광물이 나오는 지역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규정 마련
- 7) 관세법 등 개정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물품 등 수입금지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자원개발투자 자제
- 9) 형사 및 민사적인 사법절차가 실제적 절차적으로 피해 구제수단이 되기 위한 개혁
- 10)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적 지원

(3)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인 법과 제도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의 필요성 사실 해외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한두 개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 적인 안목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외무부는 2013년 8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hr-action-plan>

이는 한국이 기업과 인권 일반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크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위 행동계획은 앞뒤에 붙어있는 “서론”, “행동계획의 이행과 추가적인 계획”, “참고자료”를 제외하면, 중심이 되는 파트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의 접근”으로 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위 행동 계획을 제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가 기업에게 인권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기업이 그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이행과 추가적인 계획”에서는 위 행동계획 이행상황에 대해서 “외교부 인권과 민주주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매년 보고할 것이고, 2015년 말까지 위 행동계획에 대한 개정판을 낼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영국 기업과 인권 행동계획의 특징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국제적인 기업과 인권 관련 메커니즘(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존 러기의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행동계획은 존 러기의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의 이행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는 민간경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같이 영국이 처한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재외공관이나 UKTI(UK Trade and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교부와 UKTI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그 나라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같은 관련 규범들을 홍보하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서 일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사관들을 교육하기로 한 점이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인권침해를 답습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대부

분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외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역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행동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법 제19조는 현재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는데, 위 종합시책에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준중 책임 담보와 관련해서 시급한 연구 과제가 있다면 위 법조항의 개정의 가능성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행동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 분야 발표문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I 여성인권

글로벌 성평등 전략 : 쌍둥이 전략 (Twin-track Approach)

- ①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 여성권리와 여성역량강화
- ② 효과적인 성주류화((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 프레임 전체에 성평등이 주류화

II 3차 NAP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III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방안모색 필요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 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2011년 7월)에 ‘형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 명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고 피해입증도 어려운 상황임.
 -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음.
⇒ 성매매로 인한 피해나 알선범죄자를 신고 및 고소하는 여성들조차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시급.
-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 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2011년 7월)에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 명시
 - 정부는 2014년 7월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국회에서 비준. 그러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음.
 -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률 제정 대신 형법을 개정. 그러나 형법 개정내용에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관한 내용은 없고,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도 취약한 실정.
⇒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입법 태도를 수용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 인신매매자 처벌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법제화가 필요

Ⅳ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폭력 예방

- 무단촬영 온라인 유포의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3차에서 추가한 것은 긍정적
 -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사이트 폐쇄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개정
 - 디지털 성폭력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디지털 성폭력 처벌 및 예방을 위한 관련 사이트 규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관련 법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비해야 함
 -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함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 대중 매체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가 필요
 - 대중 매체와 온라인 공간에는 수많은 형태의 여성 비하 및 혐오 표현, 성폭력·성차별적 콘텐츠 등이 무수히 생산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성혐오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성 비하, 적대, 혐오 표현 및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중 매체와 온라인의 여성혐오는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 등으로 실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
 - ⇒ 대중 매체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각 매체에서 성차별, 여성 비하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배포, 홍보 필요

V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주 책임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과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관련법은 사업주의 책임이 불명확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2차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유급 휴가 부여, 치료 및 상담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

VI 여성근로

- 성별임금격차해소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화
 - 3차 NAP ‘근로의 권리’ 중,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의 내용으로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제고 △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
 - 지난 10년 동안 CEDAW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ICCPR)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 성별임금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아 왔음. 한국의 여성 임금은 2015년 기준 남성 임금의 63.3 퍼센트(OECD, 2015)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15년 째 변함없는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임금공개를 의무화 해야 함.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남자 정규직 임금의 35.8%에 불과한 여성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함.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 별도의 구체 내용이 없고 3차 NAP △‘가족생활 권리’에서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에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적정임금 지급여부 실태조사 등 처우개선 방안, 직무교육 강화 방안 등 마련 △‘장애인’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돌봄의 사회화 확대, 고령화의 가속화로 돌봄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 공공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고용 및 노동권 보장,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해 임금기준선 제시, 비공식 돌봄노동자(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자성 인정

Ⅶ 모·부성권 강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와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1년 권고내용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 내용임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비정규직 여성 모성권 보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등 지원 확대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소함
 - 비정규직 휴가 신청에 대한 회사 규정이 이들의 출산 전후 휴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거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계약해지가 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도 제외되며 휴가 후 복직이 어려운 실정
 -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제도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계약기간 자동연장 방안 마련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정착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패러다임 변화가 선결임: 시민이면 누구나(성별, 인종별, 연령별, 장애 유무 상관없이) 차별 없이 노동을 하고 차별없이 돌봄을 받으며 돌봄을 함께하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조안 C. 트론토 『돌봄 민주주의』
‘돌봄은 진정 민주주의의 문제로 돌봄의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정치적 과제 의 중심에 있어야... 민주적 돌봄은 함께 돌봄이며 이는 시민이 동료시민과 함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 민주적 결핍과 돌봄결핍은 동전의 양면’

VIII 여성대표성 확대

- 3차 NAP ‘참정권’에서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추진 △정책 결정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
 - 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 국회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할당제 확대
 - 헌법 개정 시 동수제 조항 삽입 및 동수내각 실현
 - 공공분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0% 여성할당제 실시
 -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 추진

IX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해소

- 특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보장, 지원 강화가 필요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미혼한부모의 인권실태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해당기관 공무원과의 포럼과 연석회의, 미혼모 지원기관방문, 미혼한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
 - 예비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안 후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많은 모욕적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공개된 장소에서 ‘미혼모라구요?’라고 묻거나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도와요! 애 낳고 오세요’ ‘아직 어린데’ 등등)
 - 주민센터에는 예비미혼모와 미혼한부모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자료도 구비되어 있지않고 담당자는 관련 지원 정보를 거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러나 예비미혼모는 출산양육 관련 긴급함과 위기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절박함이 존재함
 - ⇒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상담실 설치, 미혼모 지원 관련 안내지 비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인식개선 강연과 한부모가족 지원강화에 미혼모 내용 삽입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자료집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한국 국가 보고서에 관한 쟁점 보고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이 경 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법학박사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하여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한국이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UN의 주요 인권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해당 협약의무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국제인권협약은 국내이행이 궁극적인 목표임. 국내이행은 당사국의 비준서 기탁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으로 기속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구현됨. 따라서 이행 주체인 당사국 정부가 해당 협약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과정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것이 동 UN에서 제시하는 NAP의 핵심 목표임.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당 계획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의 협약의무의 내용, 한국 정부 정책에서의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2. 범정부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한계는 거의 모든 부처의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제목만 달리 붙여서 list-up 되어 있다는 점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여타 기본계획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인권협약이 담고 있는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로서의 협약 의무의 기준과 목표라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임.

II 생명권 관련

2-1. 아동권리는 권리 주체인 ‘아동’의 생애적 특성상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UN Treaty Body에 의한 권고는 UN 인권규범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제(instrument)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흔히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견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심지어 정부당국에서도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당사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봄. UN 협약의 이행은 당사국의 자발적 기속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위원회의 견해는 철저하게 분석되고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2-2.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생명권에 대해서 분량도 많고, 내용도 구체적인 최종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에는 아동관련 정책이 거의 특화되어 적시되어 있지 않음. UN CRC에서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의견을 냈다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특히 두드러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함. 국제기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권 상황을 당사국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줌. 특히 청소년 정책 주관 부서와 교육부에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 부처의 인식의 수준에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III 신체의 자유

3-1. 인신구속에 대한 사안은 대중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의 나열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봄. 실질적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효과를 내는 사적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의 입소 과정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합당한 절차적 정

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임. 따라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음.

3-2. 다만,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검토라도 하기를 바람. 또한 소년사법제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람.

3-3. 아동, 정신지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을 보면,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당 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해당 협약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best interest’ 법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인권 규범의 기본은 rights holder인 당사자의 견해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기본임. 그러나 인권의 주체이면서도 해당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능력(capacity)가 부재한 아동, 정신지체(혹은 질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best interest를 대표해서 (on his/her behalf)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필요. 이 주체가 competent authority, 즉 권한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해당 시설 (정신병원 혹은 아동복지시설)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함을 비치했다거나 하는 것이 다른 주체들에게는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표현은 모두 협약 의무 (treaty obligation)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3-4. 모든 기본계획의 공통 문제이긴 하지만, 평가 지표가 아니라, 단순 사업 수량을 표기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행태로서는 매우 부적절함. (최소한 전체 대상이나,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수량을 병기라도 해야함.)

IV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 민법상의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아동복지법상 아동복

지시설에 보호조치의 법적 성격과 적법 절차의 필요여부, 혹은 현행법상 절차가 대한민국 헌법 혹은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V 근로의 권리

5-1. 아동권리의 시작은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라고 할 수 있음. 절대적으로 노동과 고용을 금지하는 연령에 대한 기준,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준, 임금수준에 대한 규율, 고용계약에 있어서 주체 등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부, 청소년보호 소관 부처, 고용부 등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확인하고, 이들의 네트워킹과 협업 여부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기구에서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각 당사국이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본적 내용에 포함됨.

V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6-1.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야 함.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이에 의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수많은 결정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와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핵심적 인권 임에도 한국에서는 간과되는 경향이 가장 큰 부분임.

6-2. 동 권리는 각종 특별법보다도, 민법상 가족(친족)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법에 대해서 차별적,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고찰이 전반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Ⅶ 아동

7-1. 인권규범의 이행은 시혜적 사업을 나열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행법의 취약점은 대표적으로, 출생등록제도, 입양제도, 친권에 대한 개입의 기준 및 절차, 전반적인 Child Protection System (아동보호체계)의 존재 여부, 미성년 후견권 제도라고 봄.

7-2. 한가지 사례로서, 매년 사법연감을 통해 발표되는 한해 출생신고자의 수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생자의 수는 1990년대 초까지는 20만명 내지 40만명이 차이가 남. 그 이후에서 매년 몇만명 수준의 차이를 유지함.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과연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차이는 집행현장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인지,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universal, comprehensive, accurate해야 한다는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 제도의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legal vacancy) 상황이라고 판단됨.

Ⅷ 전반적으로

정책 과제 개별 쟁지의 해당 권리에 대한 적합성(relevance) 여부가 의문시 되

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우선순위, 정책의 수준과 수혜범위 등이 난립하여 단수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또한 인권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Agenda setting이 과연 이루어진 상황인지가 의문임.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용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권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아젠더를 세팅하는 작업부터 다시 할 것을 권고 드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안) 분류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안) 분류표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1.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1. 생명권	가. 사형제도 개선
		나.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
	2. 신체의 자유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나.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다. 대응감방 개선
		라.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마. 다양한 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 시행
		바.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사.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추진
		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 상 인권보호 지속 추진
		차.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카. 보호시설에서 인권보호
		타. 학교 체벌의 금지
		파.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3. 거주·이전의 자유
	나. 도서관 여객선 운임 지원	
	4.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가. 보안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적극 추진
		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다.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마.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 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바.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점검
	사. 생체정보의 수집 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5.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가. 「국가보안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용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6.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민간제공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라.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웹, 앱 접근성 개선
		마. 집회 시위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적 운용
		바. 아동과 청소년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자유 보장
		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7. 참정권	가.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
		나.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
		다.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
	8.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및 병영문화 개선
		다.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라.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방안 마련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1. 교육을 받을 권리	가.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나. 성취평가제 추진
		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 과제명 변경 : 수용
		마. 장애인의 교육보장
		바.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사. 온라인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
		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차.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추진
	카.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부여	
	2. 근로의 권리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속 추진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마련
		다.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아.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검토
		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보호
		차.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 책임강화
		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대책
		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너.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3. 근로 3권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다.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경제 활동에 관한 권리	가.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활성화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나.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관리
		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바. 수산물 안전성 강화		
사.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		
아.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차. 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카.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용자 지원 확대		
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속 확대		
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하.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6. 건강, 보건 및	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나.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보건으로 제공체계 마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환경권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마.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지표 개발
		바.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사.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아.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자.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차.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카. 마약류 유통관리체계 강화 및 오남용 방지
		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
		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하. 환경보건 기반 구축
		거.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너.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더.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머.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버.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안전강화	
	7.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 지역문화기반 구축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확대 및 개선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실시
		자.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
		차.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카.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8.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다.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마.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1. 여성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다. 성희롱 예방
		라.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바.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사. 여성근로
		아. 여성폭력 예방
		자. 모·부성권 강화
		차.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카. 미혼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 해소
	2. 아동·청소년	가.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라. 지식 위주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존중 교육풍토 조성
		마.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사.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자.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차.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타.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파.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하.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거.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너.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더. 아동유기, 불법입양(아동매매) 등 대책 마련
		러.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
		머.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관련 예산 확대
		버.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마련
	3. 장애인	가.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나.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바.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사.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아.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카. 장애인 노동권 보장
		타.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파.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4. 노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나. 농지연금 활성화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마. 다양한 단체·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5. 범죄 피해자	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
		나. 피해 배상과 국가 구조 강화
		다.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라.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
		마.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강화
	6. 외국인·이주민	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지속
		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계속
		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아.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자. 자국민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차.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카.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객관화 및 합리적 운영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7. 재외동포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리 지속	
		나. 중국 및 구소련 체류자격(F-4) 부여	
		다.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라.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마.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바.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8. 난민	가. 난민 심사체계 고도화	
		나.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9. 병력자 및 성소수자	가.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및 진료 거부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지속	
	10. 북한이탈 주민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개선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11. 북한인권	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사업 등 북한인권 증진 추진	
		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다. 북한법과 통일이후 통합법제 심층연구	
		라.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4. 인권 교육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일반
			나. 학교 인권교육
(1)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2)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3)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4)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2)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3)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5) 군대 내 인권교육			

영역	권리	제3차 계획 초안
		(6)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7) 변호사 인권교육
		(8)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9)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당사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맞춤형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마.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5.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 국제인권 규범이행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다. 국제인권매커니즘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방문조사 대응
		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마.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2. 기업과 인권	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및 교육홍보
		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다.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 운영 활성화
		라.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3.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가. 국제인권 논의에 적극기여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 강화
		나. 국제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지원
		마. 공익적 시민단체 지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발행일 _ 2017년 10월
 - 발 행 _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 주 소 _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가천청사 1동
Tel : 02-2110-3213~4
Fax : 02-2110-0351
 - 디자인 _ 동광문화사 02-503-5165
-